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02) 522-7284 **fax** (02) 522-7285
homepage www.minbyun.org **blog** http://minbyun.org/blog/
e-mail info@minbyu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9 5·6 Vol8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9 5·6 Vol. 82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제기와 파면의 진실
사법제대로보기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책임 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보며
시론 신영철 사태와 제5차 사법파동
민변의 활동 월례회 이대근, 한국사회 분열과 소통
근조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부쳐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9/05/06/VOL82

발행일 2009년 6월 10일
발행인 백승헌
편집인 채영호
편집위원회 황희석·김도형·김영준·김진·정은경·좌세준·이경은·황혜정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전자우편 info@minbyun.org
값 5,000원
디자인·편집·인쇄 디자인랩(02-739-9957)

CONTENTS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2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6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16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 헌재 공개변론 방청후기 _김현기 24

사법 제대로 보기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책임 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보며 _조성오 28
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_이광철 42

법률 바로세우기 미디어 관련 4대 법안 _민변 입법감시 TF 52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_민변 입법감시 TF 60

시론 신영철 사태와 제5차 사법파동 _임지봉 74

법률창고 미네르바 무죄 판결 76
용산참사 기피신청서 80
용산참사 어느 유가족의 탄원서 89

민변의 활동 한국사회 분열과 소통 – 이대근, 4월 민변 월례회 _정리 : 김영준 94
공부모임: 『다산 정약용 일일수행』 – 조선 유일의 법률가 다산을 말한다 _정리 : 좌세준 110

회원이야기 어느 로스쿨 교수의 사생활 _전형배 118
어느 늦깎이 민변 회원의 소회 _이영진 121
민변 회원들의 새 책 _정리 : 김진 124

행사후기 단체사진을 간직할 수 없는 회의
– 아시아에서 법의 지배에 관한 5차 회의 참석 후기 _서선영 126

시보이야기 열정의 3~4월, 민변 시보생활과 용산참사 공판 _윤혜령 129

근조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부쳐 _류제성 132

성명 및 논평 134

정기구독안내 137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표지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삽화는 김현경님과 유수연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BBK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글 _**박주현** 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가히 검찰공화국이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권력검찰같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검찰출신인
여당도 검찰이 접수한 듯 하고, 검찰과 언론은 장자연리스트와 박연차리스트를
전혀 상반되게 다루는 데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서로 짝짜꿍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검찰은 어떻게 권력검찰이 되었는가. 무엇보다 이명박대통령이 뒤가 구린 게 많아서일 게다. BBK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부도덕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나라품격에 대해 걱정했지, 원 자료를 갖고 있는 검찰과 미국에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다.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를 풀었고, 국민적인 저항이 촛불로 일어나자 검찰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으로부터 "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을 것이다. 권력기관의 발호를 지켜보면서, 어차피 뒤를 물리고 있는 바에야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쥐고 함께 권력을 휘두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게 있으니 조심하자!).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검찰이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자 경찰과 국정원도 " 나도 권력기관이다 "라고 명함을 내밀 법 하다. 경찰이 용산에서 무리수를 둔 것에서 밥 숟가락 얹으려는 초조함이 읽히는 듯 하고, 박대성과 박연차의 변호인이 모두 박찬종 변호사라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찍이 체험한 바 있는 국정원의 기획능력을 떠올려보기도 한다. 물론 미네르바는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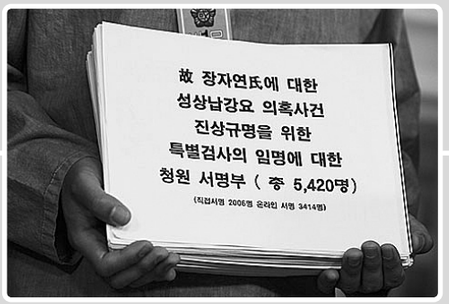

짜든 가짜든 무죄가 되어야 마땅하므로 민변의 변호사가 무죄를 위해 애쓴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번 미네르바사건이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면 민변의 변호사와 법원이 무죄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때까지 적당히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빨리 석방된 탓에 아고라에 예전의 총기 있고 감동적이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글을 다시 써서 자신이 진짜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담 때문에 박대성씨가 한국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실없는 생각도 해본다.(전기통신기본법 때문에 문장의 어미가 자꾸만 길어진다)

전통적인 권력기관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며 개명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수를 써가며 실지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이, 국세청도 " 나도 엄연한 권력기관이다 "라며 존재감을 알린다. 최근 검찰과 국세청과의 실랑이를 보며 국세청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했다. 힘 있는 기업들이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고, 어정쩡한 기업들이나 엄한 시민사회단체들만 힘들게 생겼다.

공안정국에 일단 시동이 걸리니 거침이 없다. 이미 촛불로 처벌받은 사람이 1천명이 넘는다는데 그것도 모자라 1년 전에 촛불관련 글을 올린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거나, 방송사 PD들을 체포하고, 반국가단체 사건들이 생겨나고, 집회와 시위는 무조건 원천봉쇄다. 공안정국에 언론협조는 필수이니, 언론장악에도 여념이 없다.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방송사의 논조가 날이 갈수록 변하는 것을 보면 보지 않아도 뻔할 뻔자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법질서가 확립되고 있는 사이, 부자감세, 민영화, 규제철폐 등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쏟아 부은 돈으로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고, 건설사들은 건설사 CEO출신의 대통령을 만나 한 몫 잡고서 입이 벌어졌고, 갈 곳 없는 돈은 다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모이고 있다. 실물경제와 민생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거품자산경제는 정부의 탄탄한 지원 하에 고삐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공안정국은 어쩌면 한 판 쇼에 불과하고, 저들의 진짜

BBK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부도덕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나라품격에 대해 걱정했지, 원 자료를 갖고 있는 검찰과 미국에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다.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를 풀었고, 국민적인 저항이 촛불로 일어나자 검찰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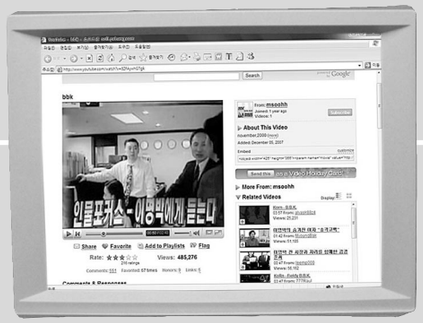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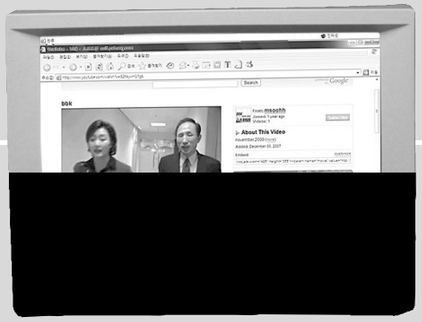

관심사는 돈의 향방과 이 기회에 한 몫 잡기인지도 모른다.

소위 법질서가 확립되고 권력과 언론이 유착되면 나라 운영하기가 여반장이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권력과 언론이 협조하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없을 터이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갤럽회장이었으니 언론과 한편 먹으면 통치는 물론이고 지지율 올리는 것조차 문제없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쉬운 길을 가다보면 다른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 중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자폐증으로 인해 좌뇌의 일정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남들은 쓰지 않는 뇌의 다른 부분이 개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의 이유로 청와대가 권언유착이라는 아편을 쓰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획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지난한 작업을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권력게임과 목도리쇼와 같이 통치에 필요한 디테일을 만들어주면 그만이니, 생각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그저 해외로 나갈 기회만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착착 법질서를 확립해가고 권언유착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사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가 보다. 이미 한번의 정권교체 경험을 갖고 있기에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현 정부의 무리수에 올인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듯 하고, 권력집단 내부에서도 파워게임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이 검찰공

법원이 검찰공화국에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고, 초중고생들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꼼수독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로 정신이 퍼뜩 들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386세대는 "독재는 무너진다"는 승리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있고, 기자들도 아직 시퍼런 날이 다 죽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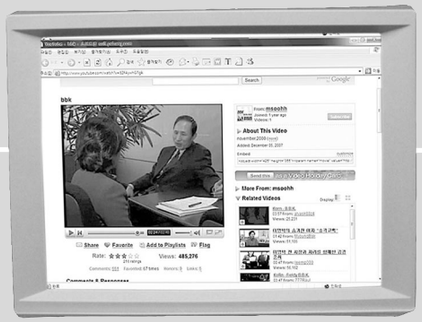

화국에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고, 초중고생들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꼼수독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로 정신이 퍼뜩 들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386세대는" 독재는 무너진다 "는 승리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있고, 기자들도 아직 시퍼런 날이 다 죽진 않았다.

무엇보다 진보개혁진영에 연대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그동안 환경, 통일, 여성, 복지, 인권 등 각론분야에 주력하면서 흩어져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하였고, 민생민주국민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연구단체들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함께 모여 민주악법에 공동대응하고 민생일자리 수정예산을 함께 만들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과정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 홀로 잘나서 분열로 치닫게 만든 개인이나 세력들의 입장이 현실직시로 조금씩 바뀌는 듯 하고, 경기교육감 선거와 재보선 과정에서 단일화와 느슨한 선거연합의 경험을 만들어내었으니 연대를 위한 한 걸음 정도는 내딘 것이라 생각해본다.

온갖 비리라는 원천적인 결함을 안고 태어난 이명박정부는 불가피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권력기관과 유착하였고, 그 결과 잘 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권력의 맛을 다시 본 권력기관들은 이 권력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올곧은 국민과 애먼 국민은 골병이 들 것이다. 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한편으로, 민주악법과 부자몰아주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에게 제시할 구체적인 비전과 이길 수 있는 연대의 정치공학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제기와 파면의 진실

글 _박지웅 회원 · 전 군법무관

1.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은 필자가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하고 4개월이 지난 때다. 필자는 작년 4월부로 임관하여 작년 내내 국선변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공판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병사의 방어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 그것이 필자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무 내내 군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고민의 해결은 그리 쉽지 않다. 군 현안에 대한 법제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법무관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고 보직의 수 또한 제한되어 문제의식을 지닌 법무관이 그것들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단기 보직순환[1]의 현실상 쉽지 않다. 게다가 군인 신분이라는 제약으로 외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해결책을 요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임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 대하여 여러 실망감들을 느끼게 되었고, 흔히 그러하듯 골프 같은 잡기적인 취미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도 참 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7월 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을 즈음 9시 뉴스를 보았다. 국방부가 대중성 높은 인문교양서와 십 수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딱지를 붙여 수거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군 당국은 또 장병들의 개인 우편물 내용을 간부 입회 아래 확인하는 등 불온서적 차단 대책을 전군에 지시했으며, 이와 함께 '북한 찬양·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등의 세 분야로 나눈 23개의 '불온서적 목록'을 지정했다는 것이었다.

두통약이 필요했다. 그 목록 중에는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史)」가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3월 경 병영체험 훈련 차 갔던 육군 15사단 모연대 모대대 소속 병사도서관에 그 책은 꽂혀 있었다. 한참 지루하던 훈련과정에서 그 책은 달콤한 청량제 같았다. 그 책에는 '대만 병사들도 월 4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데, 경제여건이 대만보다 나은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병사들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가? 와 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장교라면 누구나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국민방위군'사건 등과 같은 청산하지 못한 군의 과거사들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필자는 그 책을 통해 군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천착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법무관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많은 생각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군에서 불온이라고 지정한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다.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한스 페터 마르틴의 「세계화의 덫」과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전자는 학창시절 선배들이 '자본주의 바로알기'라는 주제 아래 새내기 교양교재로 사용했던 것으로 독일 슈피겔(Der Spiegel)지가 신자유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한 것으로 평하고 있는 책이다. 후자는 학술원과 주요 일간지가 베스트셀러로 선정한 책이자 올해의 책 등으로 지정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이 책들을 읽은 나는 불온 장교가 되었구나'싶었다.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리스트에 등재된 책들을 장병들은 읽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 책을 영내에 반입하면 수거하고, 심지어 장교숙소에까지 불시검열로 책을 수거해 간다고 하였다.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지적과 함께 보수 일간지조차 국방부의 조치를 힐난하고 나섰다. 인터넷 서점들은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를 재치있게 이용하여 홍보한 덕에 해당 불온서적(?)의 판매가 증가하는 상당한 실익을 거두기도 했다. 국방부의 조치에 항의라도 하듯 시민들이 불온서적을 자발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판매량이 불온서적 지정이전보다 최고 10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이다.

2. 문제의식의 형성

이런 어이없는 사태에 대하여 필자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른 생각은 '이 조치는 위헌이다'는 것이었다. 군인이 된 자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양심형성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자유권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군인이었고 이 지침의 수범자이다. 이 책들을 내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취득했기에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필자 역시 의무복무기간 중인 장교에 불과하고, 필자가 자발적으로 기본권

1) 통상 보직은 1~2년 주기로 바뀐다. 법무관 사이에 보직경쟁은 치열하기가 이를 데 없다.

국방부가 대중성 높은 인문교양서와 십 수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 딱지를 붙여 수거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군 당국은 또 장병들의 개인 우편물 내용을 간부 입회 아래 확인하는 등 불온서적 차단 대책을 전군에 지시했으며, 이와 함께 '북한 찬양' '반정부 · 반미' '반자본주의' 등의 세 분야로 나눈 23개의 '불온서적 목록'을 지정했다는 것이었다.

을 제한당하겠다고 요청한 바도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의로 필자의 불가양(不可讓)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며칠 내내 불쾌했다. 이후 밝혀진 것이지만' 불온서적 '의 심의과정, 심의위원, 결과 등도 전부 오리무중이었다.

우선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고 싶었다. 여러 사람들과의 토론이 필요했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법무관들이 이 조치를 인식하고 있는지, 이 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물어보았다. 상당수 법무관들의 반응은' 국방부의 조치를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였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헌법소원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법무관들에게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력이 있는 법무관들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라는 방식의 문제제기를 다소 꺼려하는 듯 했다. 그런 보수적 접근들을 이해하고 8월 중순 경 그 해결책으로 일단은 군 내부의 문제해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법무관들에게 사전에 법적 질의를 거쳤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대답인즉' 없다 '는 것이었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질의를 하여 왔다는 것이었으며, 법무관들이 짤막하게' 위헌소지 '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그렇게 책을 지정할 때는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법적 질의과정은 간단하게 끝내버린다는 것 말이다.

필자는 주간회의 자리에서 당시 상관인 군사법원장께'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법무관들에게 법적 질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지침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다. 그 분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문제제기를 하자고 하셨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불온서적 '으로 지정된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 무심한 반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험회피적 반응(risk - avoiding response)들을 보인다.

그리고 보름 가량이 지났다.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군인권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후, 필자는 어느 정도 확신범(?)이 되었다. 인권위가 권고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군 내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군법무관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곧장 필자는 개략적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개요를 만들었다. 본안(本案) 전 판단사항과 본안 판단사항으로 분류하여 특히 본안 전 판단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두었다.

8월 마지막 주 지금은 전역한 한창완 법무관(사법연수원 35기)이 군법무관 내부통신망 열린게시판(지금은 파면 사태 이후 군법무 수뇌부의 입단속으로' 닫힌 게시판 '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한다)에 올린 글을 발견했다. 한 법무관은 당시 내부통신망에' 시중 출간도서에 대한 불온서적의 지정은 부당하며 최인훈의 「광장」은 왜 불온서적이 아니지?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온서적 지정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필자 혼자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다. 바로 한 법무관께 전화를 걸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 법무관은 흔쾌히 수락하였다. 한 법무관은 또'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언론문제에 관하여는 군에서 심각하게 반응을 하니, 언론 접촉은 하지 말아야 한다. '는 입장을 표시했다. 필자 역시 같은 생각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법무관들을 설득해 나갔다.

육군본부 사무실 2층에는 지영준 법무관(군법무관 14기)이 계셨다. 그 분은 법리가 뛰어나다고 법무실에 소문이 나있어 만나보고 싶었다. 군에 들어와 헌법소원 4건을 제기하여 1건을 승소한 경험[2]이 있어 이 분에게' 불온서적 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의뢰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같은 조의 선배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다친다 ',' 괴롭힘을 당하다 전역할 것이 분명하다 며 필자를 말렸다. 사법연수원의 지도교수님만 『헌법재판실무제요』라는 책을 주시면서' 몸조심 하라 고 하신 정도였다. 하지만 지 법무관은 적어도 헌소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 법무관은 우선 심판청구서 개요를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나눈 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막상 지 법무관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필자로서는 다소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극적으로 총대를 멘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헌법소원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전역할 즈음에나 군 인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반면 지 법무관은 단호했다.' 지금 당장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 며 소장 작성을 격려해 주셨다. 그 분이 아니었더라면 필자가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국방부의 조치를 그냥 술안주거리로 삼는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함께 파면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필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지 법무관께 감사드린다.

3. 법무관 7인의 구성과 '불온' 의 탐구

이렇게 3명이 일단 헌소를 제기하기로 매듭을 지었다. 당시 필자는 10월 22일, 예정된' 한 - 미법무관 세미나 에서 다룰' 육군국선변호제도의 현 과제와 미래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두뇌를

2)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결정)이 그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에 대하여 필자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른 생각은
'이 조치는 위헌이다'는 것이었다. 군인이 된 자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양심형성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자유권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워밍업(warming-up)할 겸하여 9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미 애리조나와 LA 등을 여행하였다.

한참 미국 말에 적응할 즈음인 9월 셋째 주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한창완 법무관에게서 ' 소장은 잘 쓰고 있느냐 '고 묻는 전화가 걸려와 10월 둘째 주까지는 작성을 마치겠다고 확답을 했다. 그리고 9월 말 한미법무관세미나 때문에 국방부 국선변호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었던 필자에게 지 법무관은 인사소청제기와 관련하여 소청대리인으로부터 소청대리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필자는 지 법무관의 부탁에 따라 소청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무관 선배인 최 변호사와 이래저래 인생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필자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구상을 얘기하자 최 변호사는 필자의 생각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다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주실 뜻을 밝혔다. 무료변론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날은 최 변호사와 필자의 첫 만남이었지만, 바로 같은 배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10월부터는 정신이 없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보수교육을 받으러 들어간 것과 동시에 한미법무관세미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겹쳤다. 그 와중에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힐난하고 나섰다. 국방부장관은 그에 아랑곳 하지 않고, '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반하는 도서라면 추가로 불온서적 지정을 할 것 ' 이라 입장을 밝혔다.

뉴스에서 이를 본 필자의 심정은 루비콘 강을 바라보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고 말한 시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더 이상 일말의 망설임 따위로 양심에 반하는 부작위를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럿이 뭉치지 않는 한 개인은 약한 것이 인간의 기본심성이라 필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약한 마음도 여전했고 고작 3명이 심판청구를 한다면 대의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에 좀 더 많은 법무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주에 친하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인 이 모 법무관[3]에게 전화를 했다. 이 법무관은 특전사에 자진하여 지원했을 만큼 군에 대한 애정이 강한 친구이다. 술 한 잔을 청하며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법무관은 숙고한 뒤 바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함께 보수교육을 받고 있던 신 모 법무관(연수원 34기)에게 참여의사를 물었다. 신 법무관은 군생활 동안 쌓은 건설법무업무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군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레바논 PKO 1진파병은 그의 인생에서 상당한 이정표를 그었음이 분명하다. 신 법무관은 심판청구 하루 전 청구서를 읽자마자 별 말씀 없이' 무조건 하자 '고만 하면서 동참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신 모 법무관(군법무관 16기)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신 법무관은 종합행정학교 지도교관으로서 군인권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 헌법소원을 낼 터이니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자 흔쾌히 응해 주셨다. 심판 청구 후' 군 인권의 역사를 10년 앞당겼다. 군법무관 10년의 해묵은 과제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가 생각보다 잘 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법무관 73기 동기 싸이월드 내부통신망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하는데 동참 여부를 묻고 싶다 '고 글을 올렸다. 동기인 김 모 법무관(연수원 37기)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 당일 오전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 법무관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와 동참의사를 밝혔다. 참으로 고마운 순간이었고 그렇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7인의 법무관이 형성된 것이다.

필자는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날만 해도 청구서를 쓰면 쓸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다른 한편 어법에 그릇된 것과 오탈자를 찾아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4], 국방부' 불온서적 ' 지침인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5]의 위헌성, 특히' 불온 '의 개념이 대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보강을 하는 데 중점을 기울였다. 국방부는 지침에서' 불온 '이라는 개념을'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북한찬양 '이라는 용어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었지만 불온의 정의는 불명확하고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불온이라는 말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법원에서 이적성이라는 개념 비슷하게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과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다. 최근 육군 법무실장이 이를 혼동하여 헌재에 이적성과 같은 개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무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불온(不穩)은 말 그대로' 온당하지 않다 '거나' 권력에 맞서거나 반하는 성질이 있다 '는 것이다. 도대체 말 자체로 정의가 되지가 않는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시절 한반도로 유입되어온 용어이고, 기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의 역사적 맥락을 갖는 용어이다. 하나는 19세기 중반부터 일본을 휘감은 전체주의이다. 일본사회는 페리제독이 1853년에 막부체제를 위협하고 개항을 요구하자, 막부체제의 개혁으로 천황제를 내세우며 천황제에 반하는 어떠한 사상 - 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였지만, 보편적인 자유주의도 포함되었다 - 도

3) 이들이 아직 이들이 군인 신분이라 실명이 저널에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하여 익명으로 표시한다.
4) 군인사법 제47조의2 (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6.10.4〉
5)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불온표현물의 소지 · 전파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 · 도서 · 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 복사 · 소지 · 운반 · 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불온'은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자 권력자의 체제유지를 위한 무시무시한 탄압도구의 개념이며,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이적성'과 동치될 수 없는 대단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불허하고 천황제의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 개념을 이용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보다 직접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불온의 개념이고 서구사회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갖는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황청은 루터의 사상에 대해 불온, 체제전복의 의미를 가지는 subversion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의 반역법(Act of Treason)에서 교황체제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자를 반역자로 몰아 화형을 비롯한 각종 악형에 처했던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해' 불온 '은' 민주주의 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자 권력자의 체제유지를 위한 무시무시한 탄압도구의 개념이며, ' 적을 이롭게 한다 '는 뜻의' 이적성 ' 과 동치될 수 없는 대단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도 불온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전기통신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결정[6]하지 않았던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1주일 전 필자는 필자의 아버지와 형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두 분 다 극구 만류하다가 소장을 보시더니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되려 격려해주셨다. 필자의 형은 필자가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날 정신이 없어서 오탈자를 검토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직접 교열까지 보아 주었다. 또 지마켓, 알라딘 등에서 판촉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다양한 그리고 발전적인 사고관을 길러주는 책들을 군인이 읽음으로 자칫 결여할 수 있는 현실감각들을 되찾을 수 있다. '는 내용을 청구서에 추가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8년 10월 22일 7인의 법무관들은 드디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4. 클라이막스

헌법소원을 제기하던 날 국방부는 사태파악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국방부장관은 항명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법무관들의 조언으로 이를 철회했다. 그 다음에는 헌법소원의 제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필자를 비롯해 다른 6인의 법무관들은 곧장 육군본부와 공군본부로 불려가 감찰조사를 받았다. 처음엔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감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획책이라도 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왜곡할 것이라는 지 법무관의 의견에 따라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법무병과에서 2인, 인사, 감찰, 헌병에서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필자에게 헌법소원을 왜 제기했는지부터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10. 24. 오후 두시부터 밤 12시까지, 다음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14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다른 법무관들도 가담정도(?)에 따라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조사를 받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법무관들의 진술이 모두 짜 맞춘 것 같이 한결 같아 조사위원들이 당황했다고 한다. 아무튼 감찰조사를 받고나자 필자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또 동참한 법무관들 사이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졌는데, 일부 법무관들은 처음에는 서로 얼굴도 몰랐으나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술자리를 자주 같이 하게 되고, 또 같은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임 육군법무실장은 감찰조사과정에서 형사건이나 징계건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헌법소원 청구가 무슨 징계 건이냐? '는 입장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 역시 10월 23일 한미법무관세미나를 잘 마무리하고 본업인 국선변호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5. 헌법소원 청구 후 파면까지

그러던 11월 육군법무실장이 교체되었다. 원래 병과장은 군인사법 제21조에 의하여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지만, 10개월도 채우지 못한 때 병과장이 교체된 것이다. 전 법무실장에게 어떤 강한 외압 같은 것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이 육군법무실장(육사 39기)으로 부임한다는 소문에 다른 이들처럼 필자 역시 계룡대 육군법무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11월부터 간절히 들기 시작했다. 그런 이에게서 우리의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그다지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로 내부통신망에 비판적인 글을 쓰는 방식으로 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해 보려했다. 2008년만 해도 군내에 큰 사고가 많았다. 중위급 장교가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4백억 상당의 투자사기행각을 벌인 일, 장교가 최전방 GP에서 수차례 술판을 벌인 일 등 각종 사건사고에 무언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필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은 화를 주저할 수 없었는지' 법무관의 훈련을 강도 높게 하여 군인정신이 깃들게 하라 '고 군 수뇌부들에게 지시했다. 논산훈련소(연무대)에서 2주, 영천 부사관학교에서 1주 훈련을 받으며 소위' 빵이 치게 '하길 원하는 듯 했다. 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법무관 내부통신망에 장관의 행위가 지나친 군정개입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헌법소원으로 신임 법무관들이 피해를 받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헌법소원

6)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 480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소원을 제기하던 날 국방부는 사태파악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국방부장관은 항명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법무관들의 조언으로 이를 철회했다.
그 다음에는 헌법소원의 제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의 동기를 올리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법무관들을 비난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친북좌파몰이 언동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다. 거의 전방위로 하나하나의 사태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였다. 올 1~2월쯤 되자 필자는 거의 정신적으로 녹초상태였다.

내부통신망에 글 하나 올리면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수뇌부 일부가 필자를 불러서 왜 이런 글들을 올리느냐고 성질을 부렸다. 그리고 1월부터 갑작스레 지 법무관과 필자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했다. 징계건은 이미 물 건너 간 이야기인 줄 알았기에 당황했고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징계사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입장은 모두 감찰조사에서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법무실장을 비롯한 고검부장(육사 49기)은 필자를 법무실장방에 불러서 징계조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각종 압박을 가하고 회유했다. 첫 번째가 감찰조사 때부터 요구하던 헌법소원 취하였다. 취하하면 징계를 무마시켜줄 것인데 왜 취하하지 않고 버티느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소송대리인의 교체였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최강욱 변호사의 언론플레이로 군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군에 대한 순수성을 보여주려면 최 변호사 대신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여야 한다. 최강욱을 물 먹여야 한다. ’고 했다. 두 가지 요구 중 하나라도 취하하면 징계건과 연계하여 이를 무마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형법상 강요 내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필자는 둘 다 응하지 않았다. 다른 법무관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필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던 고검 검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상황을 물었을 때마다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묻자 맨 처음에는 경징계로서 감봉이나 근신을 거론했으나 2월에 들어서는 갑자기 파면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징계기록에 군(軍)파면 사례들이 첨부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이를 의식하였으나 설마하며 3월부로 옮길 춘천 2군단의 아름다운 경치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며 즐겁게 생활하자고 마음먹고 있던 3월 17일,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전입 당일날 출석을 하라고 지시했다. 필자의 생각에 이는 농간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불출석하기로 하고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그 전후 일련의 과정들이 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답변서를 보내는 것으로 방어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다 내려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필자가 징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몇몇 소명자료는 제출도 되지 않았다.

징계혐의사실의 요지는“ 국방정책의 합헌성을 주장해야 할 법무관인 징계혐의자 박지웅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징계혐의자 지영준의‘ 지시 ’-지령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를 받아 최강욱 변호사를‘ 접촉 하여 헌법소원을‘ 계획 한 후 이를 제기하였다. ”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유는 10쪽에 달한다. 몇 가지 핵심만 살펴보자.

헌법소원을 통해 국방부의 조치가 위헌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군 통수계통을 문란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1)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상관에게 건의해야 함에도, 국방부장관의 적법/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군의 지휘계통문란, 군기단결을 저해한 법령준수의무(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4조 위반)이며,
2) 국방정책의 합헌성을 주장해야 할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지시를 불복종할 목적으로 사전에 허가없이 단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군법질서 확립등 엄정한 군율, 군기강 확립의 최후보루인 군법무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군무외의 일을 집단적으로 한 군기강 문란행위로 복종의무 위반(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이며,
3) 군인의 대외활동시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언론매체에 국방부 조치를 폄하하는 의견을 발표하여 군 수뇌부를 비방, 모욕했으며 자신의 의견, 주장내용을 군 외부에 공표한 점에 법령준수의무(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군인복무규율 제17조, 국방홍보훈령 제22조)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군인복무규율)을 한 것이다.

그 외에 사유가 두 가지 더 있으나 별로 거론하지 않겠다. 연수원에서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법무관도 있었다.

맨 처음에 징계혐의사실로 보낸 것에는 탈모증 치료로 머리 짧게 자른 것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목적이라고 작성했던 것도 있었다. 도를 넘어도 한 참 넘는 것이다. 이러한 파면사태를 주도하는 데 육군법무실장이라는 병과원을 감싸주어야 할 직책이 있는 자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 정식으로 밝힌다.

지 법무관도 비슷한 혐의를 뒤집어써 파면이 되었다. 다른 법무관들은 가담정도가 낮다고 감봉, 근신 등을 받았다. 2명의 법무관은 헌법소원 청구를 취하했다.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법무수뇌부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며 청구를 취하하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소송,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 마침표를 찍지 않은 필자의 이 이야기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매듭지어지는 그런 작은 소망 말이다.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글 _**최강욱** 회원 · 민변 사법위원장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률상의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것이다. 일제고사 보는 날 다른 형태의 학습을 해도 좋다는 지도를 한 선생님들이 파면되고,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상상 이상의 뇌물을 챙긴 경찰관들도 파면된다.

이에 더하여‘ 불온서적 지정 ’이라는 시대착오적 코미디에서도 파면이 등장하였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냉소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데만 그쳐야 하나를 고민하다, 자신이 배운 가장 온건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한 군법무관들이 파면되었다. 필자에게서 처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 같이“ 설마 그럴 리가 ”였다. 그리고 말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설마 헌법소원 했다고 파면을 했겠어? ”

할 말이 없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논리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고 한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고 한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인권시계가 거꾸로 간다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다. 북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며 우리 외교관이 탑승한 차량이 테러집단의 공격목표가 된 시기에 징계의 부당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하기도 한다(<조선일보> 2009. 3. 24.자 칼럼 참조). 어떻게 군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수뇌부의 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냐며, 파면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고개를 주억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짐짓 점잖은 모습으로‘ 문제제기 방식이 명령과 복종을 중시하는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분명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 ’이라는 일방적 판단을 객관으로 가장하기도 한다. 급기야 좌익이 군내에까지 침투하여 준동하는 증거이므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소매를 걷어붙이는 사람도 있단다.

같은 법조인인데도, 판사에게 전화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재판에 관한 사항을 주문하고도“ 행정조치 ”였다고 강변하는 이에겐 징계 이전에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조치에 이은‘ 경고 ’가 내려지고, 본대로 배운 대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원형탈모증에 걸릴 정도로 동료 법조인들에게 시달리다 단박에 파면되는 세상이다. 법은 결국 강자의 도구라 했던가. 결국 기준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좌냐 우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에 있는 듯하다. 높은 사람은 지시를 할 수 있고,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은 그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따라야 하며, 더욱이 그런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나 깨나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어른 ’들에 대한 예의라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 법률가가 지닌 상상력의 한계에 대하여 늘 자조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건 우리 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지닌 가치에 대한 궁금증이다. 도대체 직위가 높으면 헌법과 법률의 규율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인지, 좌우의 구분이 헌법질서에 우선한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언행들이 다반사로 분출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만을 앞세우는 억지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군대는 특수한 곳이므로 일반사회의 가치를 대입하여서는 안 된다 ”는 주장에 나아가면 이미 합리적 논박을 위한 의지는 상실되고 만다. 도대체 군대이기에 헌법과 법률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군 지휘관의 지휘권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군대는 대한민국 헌법 너머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국가라는 말인가? 군도 엄연한 국가의 일부이자 헌법의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토론은 논리를 가장한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뿐이다. 게다가 난데없이 안보논리까지 더해지면 또다시 좌익, 빨갱이 운운하는 단말마적 외침까지 등장한다.

하물며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이후 육군 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내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인화 ’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군법무관 훈련은 신병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서 함께 하는 기간을 두어‘ 법률가 ’이기 전에‘ 충성 ’을 앞세우는 태도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경향신문> 2009. 3. 21.자 참조). 군인이 법을 앞세우면 충성심이 무뎌진다는 것이고, 법과 권리를 따지지 말고‘ 까라면 까는 ’게 군대라는 것이다. 이렇듯 진정으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인가?

지금도 군 안에서는 일단 저지른 일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법무관들을 괴롭히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돈다고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한 2년이니, 그 동안 충분히 괴롭히면 다시는 이런‘ 버릇 없는 짓 ’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수뇌부의 판단이란다. 우리 군이 얼마나 봉건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헌법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그대로 웅변하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다. 법무관들의 대리인인 필자의 글이 과연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괜한 글로 오히려 당사자들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 끝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이어질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맡기더라도, 일단 초유의 사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적 사실관계의 일부만이라도 나열하여 소개하자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필자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률상의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것이다. 일제고사 보는 날 다른 형태의 학습을 해도 좋다는 지도를 한 선생님들이 파면되고,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상상 이상의 뇌물을 챙긴 경찰관들도 파면된다.

나름의 코멘트는 독자의 건전한 판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양념 정도로 추가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다음에서는 국방부가 정리하여 주장한 사실관계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물론 각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일이나,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사실의 나열만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이번 파면처분 등의 징계조치는 법무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그 발단이 되었다.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상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소위《불온서적》의 판별 및 지정 경위이다. 국방부의 주장에 의하면,“ 국군기무사령부가 2008. 7.경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약칭 한총련이 반정부 · 반미 의식화 사업을 2008년 7~8월 방학기간 중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제16기 사업계획서상 교양도서로 추천된 도서들을 대상으로‘ 병영 내 도서 보내기 운동 ’을 전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7월 15일경 병영 내 무단 반입시 장병 정신전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들을 검토 · 분류하여 23종의 도서목록을 선정한 다음, 같은 달 17일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필자 주 - 이하 인용부호를 한 부분은 징계혐의사실 기재내용에서 발췌]

이어“ 국방부는 같은 달 22일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위 도서들의 영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 사건 지시를 하달하였고, 같은 달 31일자 <한겨레신문>이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을 계기로 정기 국정감사에서 위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화되었으나,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 정신전력 유지 · 강화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국방부는 각 군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던 같은 달 22일부터 정신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훈 · 문화자료심의위원회(정훈문화활동규정에 따라 위원장 국방교육정책관, 간사 정신전력과장, 위원으로 문화정책과장 등 7인으로 구성)를 소집하여 위 도서들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같은 해 8월 15일 위 23종의 도서들 모두가 장병 정신전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구체적으로 친북성향 6종, 반정부 · 반미 14종, 반자본주의 3종으로 분류하였다. ”

여기서 한총련이 등장하고 도서보내기 운동이 등장하는 이유는 불명확한“ 불온 ’의 개념 요건을 구성하기 위한‘ 이적표현물 ’과의 연계성을 위한 것이다. 한총련은 과거 대법원에서 수차 이적단체로 인정한 곳이니 그곳에서 군대에 책을 보내려하는 만큼 긴급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불온서적 금서조치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전제이다. 그렇다면 만일 한총련이 이러한 도서들을 선정하여 군대에 보내기로 하는 사업을 전개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군의 설명과는 달리 한총련은 이미 그러한 사업이나 운동을 전개한 적이 없다고 공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16기 한총련의 사업계획서는 헌법재판소에도 이적단체의 선동적 도서보내기운동을 입증할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는바, 여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군대나 군인에게 도서를 보내자 ’는 내용은 단 한 줄은커녕 군대의‘ ㄱ ’자조차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문건은 A4지로 무려 30쪽에 달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군대의‘ ㄱ ’자조차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다 한총련 조직원이란 말인가?

문제가 된 23권의 책 제목은 위 문건에서 군데군데 등장한다. 그런데 위 문건에 등장하는 책은 이 밖에도 많다.‘ 일꾼 ’으로 표현된 한총련 내부 조직원들에게 교양자료로 여러 방송프로그램과 책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천한 책만도 무려 44권이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23권을 추려낸 이는 한총련이 아니라 기무사가 된다. 이는 위에 기재된 국방부의 문건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추려낸 23권을 다시 전문가들이 심의해보아도 역시 불온하더라는 게 그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이다. 사법심사가 아닌 행정청의 자의적 심사에 따른 금서조치도 문제이지만,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확인해야 할 문제가 또 남는다. 위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정체불명인 것이다. 위원의 숫자가 보고서마다 달라지고 제출 자료마다 달라진다. 위원장은 동일하되 간사는 위원 명단에 포함되기도 하고, 위원의 숫자는 어느 자료에는 아예 드러나지 않다가 5명이 되기도 하고 7명이 되기도 한다. 급기야는 규정에도 없는 8명이 등장하기도 했다. 심의기간 또한 들쑥날쑥이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되었다가 다시 8월 17일까지 심의했다고도 하며, 의결한 것은 8월 18일이라고도 한다. 안타깝게도 8월 17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찾아낸 착오를 정정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설명한 자료에는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심의했다고도 한다. 물론 심의내용과 자료가 정리된 회의록은 지금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우리의 경험칙상 7월 31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에 심의가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2~3일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심의자료를 보내 검토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리 검토하는 시간조차도 심의에 포함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은 책을 구할 수 없어 처음엔 책을 구하느라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초에는「북한찬양 11권, 반정부 · 반미 10권, 반자본주의 2권」으로 불온서적이 분류되었다가, 어느 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는「북한미화 7권, 반정부 · 반미 성향 13권, 반자본주의 2권」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북한찬양 6권, 반정부 · 반미 14권, 반자본주의 3권」으로 바뀐다. 왜 굳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기를 고집하는지, 무엇 때

만일 이번 헌법소원을 개인적 권리구제만을 위한 '군무 외의 일'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시각은 앞서 헌법소원 제기를 군인복무규율 제24조(의견의 건의) 위반으로 보는 것과도 모순된다.
군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였는데도 왜 지휘체계에 따른 보고와 건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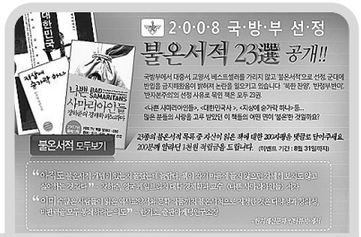

문에 분류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나 설명이 없다.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포괄적이라도 상관 없으나,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은 한정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행정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군이 제시하는 「군인복무규율」이나 「정신문화활동규정」가운데 어디에도 세 가지 범주의 서적을 불온서적의 예로 열거하거나 분류한 조항은 찾을 수 없다. 장하준 교수의 유명한 저서 ' 나쁜 사마리아인들 '은 처음엔 「반정부 · 반미」로 분류되었다가 나중엔 「반자본주의」서적으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필자가 보기에 심의의 실체는 오리무중이거나 급조된 허구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국방부의 설명에서 발견되는 숱한 거짓과 모순의 아주 작은 한 자락일 뿐이다.

징계혐의사실로 기재된 내용과 법무관들이 위반했다는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징계사유로 나열된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긴다." 징계혐의자들은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상관에게 건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적법/정당한 명령(지시)을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기와 단결을 저해한 것으로 각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여기에서 법무관들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핵심적 법령의 내용을 소개한다." 군인복무규율 제24조(의견의 건의) ①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상관에 대한 부하의 건의권을 규정한 임의적 권리조항이다. 그래서 ' 건의할 수 있다 '고 표현되어 있다. 도대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면 ' 건의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는 필수적 의무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상관의 조치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상관에 대한 건의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 과연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 더 소개한다." 청구인들 7인의 행위는 국방정책의 합헌성을 주장해야 할 군법무관들인 징계혐의자들이 사전에 허가 없이 단체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군 지휘계통의 엄정함과 군무의 순수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결국 징계혐의자들의 헌법소원 청구행위는 군법질서 확립 등 엄정한 군율 · 군기강 확립의 최후보루인 군법무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군무 외의 일을 집단적으로 한 군기강 문란행위로서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1항에 위반되어 각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 군무 외의 집단행위 '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10. 선고 2004도5035). 군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 공익에 반하는 목적 '을 위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반공익적 행위이고 이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반공익적 국가기관이라는 것인가. 군은 결국 이러한 궤변을 통해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 아니 장관의 개인적 체면만을 ' 공익 '으로 간주하는 착각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또 군법무관의 역할에 대한 군의 시각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군법무관은" 합헌성 "만을 주장해야 하고" 엄정한 군율 · 군기강 확립 "을 하는 것만이 본분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도중에 취하한 사람은 징계가 유예되었고, 취하하지 않은 사람은 파면부터 근신까지의 징계를 받았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파면을 받아 마땅한 과거의 지휘계통 및 군기강 문란행위가 일거에 소멸된다는 뜻인가? 이러고도 헌법소원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군의 강변이다. 그렇다면 취하를 한 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헌법소원을 냈다가, 별 압력도 없는데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 소원을 취하한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소가 웃을 일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일 이번 헌법소원을 개인적 권리구제만을 위한 ' 군무 외의 일 '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시각은 앞서 헌법소원 제기를 군인복무규율 제24조(의견의 건의) 위반으로 보는 것과도 모순된다. 군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였는데도 왜 지휘체계에 따른 보고와 건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 조항을 운위한 당사자들의 해석에 따르려면 적어도 헌법소원 제기 내용이 '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 '이라는 점을 전제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도 다수인 명의의 헌법소원 청구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 "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복무규율 24조와 13조가 앞서 살핀 바처럼 서로 병존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항을 한꺼번에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은 분명한 모순인 것이다.

징계사유로 들어 문제 삼은 사실 중에는 기자와 접촉하여 국방부의 위 조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향후 헌법소원 청구 계획 등에 관하여 제보하였다.(여기서의 인터뷰 내용은 10. 23.자 <서울신문>을 통하여 박지웅의 실명과 함께 '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불온서적을 정해 금지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는 취지로 보도되었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문제된 법무관과 기자의 만남은 2008년 9월 초순에 있었던 일이고, 서울신문 기사가 나온 것은 이미 10. 22. 전체 언론매체를 통하여 헌법소원제기 사실이 공표된 이후인 10월 23일이다. 물론 그 중간에 다시 법무관과 기자가 만나 헌법소원에 관한 보도 및 대응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담긴 징계혐의 사실 증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라는 사유에는 다음의 사실도 기재되어 있었다. "조사과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삭발하고 벙거지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에 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군복에 벙거지 모자를 착용하고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대화를 나눈 사실은 전혀 없다. 9월의 만남은 평소 대학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깊던 두 사람이 일상적인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한 때 이슈가 되었던 불온서적 지정 해프닝에 대한 가벼운 대화와 소감을 나눈 정도가 전부이다. 그런데 이 만남을 기억한 기자가 추후 마치 해당 법무관을 만난 것처럼 실명을 거론한 기사를 쓴 것을 트집 잡은 것이다. 이러한 허구성 때문에 당사자는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내 기자에게 해당기사의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이것을 소위 ' 언론플레이 ' 로 간주하여 징계한 것이다. 도무지 군에 있는 사람은 친분관계로 기자를 만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도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되고, 그 시점과도 무관하게 일단 그 비슷한 사실이 보도되기만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원이 제기된 이후 대리인인 본인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여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위헌성을 짚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변호인이 국방부에 망신이 되는 내용을 들어 계속 비판을 가하는 인터뷰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법무관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니, 결국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란다. 그러나 향후 불필요한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 법무관들이 직접 언론접촉을 하지 말자고 결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이후 단 한 차례도 직접 언론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들도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조차 언론취재에 응하지 말도록 압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결국 법무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군은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인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 · 주장 내용을 군 외부에 공표한 것으로 군인복무규율 제17조 및 국방홍보훈령 제22조를 위반하고,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규율 제9조를 위반 '했다고 한다. 친한 선배이건 말건 모임의 성격을 따질 필요도 없이 기자를 만나는 것은 무조건 ' 대외활동 ' 이고, 대리인의 언론인터뷰 또한 ' 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된 내용이 장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창피하긴 했던 것 같다. 그걸 견디자니 너무 힘들어 당사자들에게 억지논리를 덮어 씌워 분풀이를 한 것이라는 점 외에 어떤 솔직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까.

물론 이상의 논의는 현재의 군인복무규율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하였을 경우라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해당 조항이 지닌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 규율의 내용이 합당하므로 전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여전히 이상의 사실과 판단이 옳았다며 당사자들이 제기한 항고심사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담긴 징계혐의 사실 증 '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이라는 사유에는 다음의 사실도 기재되어 있었다. " 조사과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삭발하고 벙거지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에 임하는 등의 행위 '를 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군복에 벙거지 모자를 착용하고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삭발은 계속되는 조사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유와 협박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였고, 조속한 치료를 위해 머리를 짧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의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밝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치졸했다 싶었는지 이 부분은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에서는 빠져있다.

자, 이것이 세간에 알려진 군법무관 파면사태의 사실관계 가운데 일부이다. 글을 쓰는 내내 군이 제시한 모든 사실관계와 논리를 일일이 열거하며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여기에 쓴 사실과 모순이 그 전부라 전제하고라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자신의 경거망동을 뉘우치며 다시는 공직에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아가시겠는가? 아니면 법리와 논리를 가장한 거짓과 억지에 맞서 끝까지 싸우시겠는가?

굳이 1837년 독일에서 일어난 ' 괴팅겐 7교수 사건 의 내용과 경위를 재삼 장황하게 소개하지는 않겠다(경향신문 2008. 11. 22.자 기사 참조). 하지만 오늘날의 독일에서는 부하가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휘관은 3년 이하의 징역(독일 군형법 제35조)에, 악의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조치를 취한 상관은 5년 이하의 징역(독일 군형법 제39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독일에서나 가능한 것일 뿐, 우리에게는 전혀 참고할 수 없는 불순분자들의 억지에 불과한 것인가?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 내의 징계제도는 징계권자의 또 다른 무기이자 합법적 폭력의 다른 형태로 작동하고, 대법원이 아닌 군 지휘관 밑에 별도로 설치된 기형적 군사법원의 권한은 여전히 변함없다. 헌법과 인권이 군대의 조직을 내적으로 재구축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군대의 조직이나 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제가 50여년 동안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돼 왔다는 것은 헌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군과 군 사법제도 및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괴팅겐 7교수 사건과 같이 역사는 분명 오늘의 이 사태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역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과 불온서적 지정 및 파면을 행한 사실 가운데 어떤 것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할까?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과 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조사자들 및 파면 결정을 한 징계위원과 징계권자, 승인권자 가운데 누가 법을 남용한 것으로 기록할까? 역사는 헌법소원과 파면 결정 중 어떤 것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꼼수로 평가할까?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남길 이름들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 헌재 공개변론 방청후기

글 _**김현기** 인턴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목록

구 분	도서명
북한 찬양	〈북한의 미사일 전략〉, 〈북한의 우리식 문화〉, 〈지상에 숟가락 하나〉,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벗〉,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학시절〉, 〈핵과 한반도〉
반정부 · 반미	〈미군 범죄와 SOFA〉, 〈소금 꽃나무〉, 〈꽃 속에 피가 흐른다〉,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 역사 이야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김남주 평전〉, 〈21세기 철학이야기〉, 〈대한민국 사〉, 〈우리들의 하느님〉
반자본주의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삼국지연의>에는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패퇴시키는 오장원에서의 일화가 나온다. 제갈량이 죽기 전에 미리 사기극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만들어낸 빛나는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마의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다 도망치게 된 꼴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어찌보면 사마의 본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혹은 제갈량에 대한 열등감 혹은 자신감의 부재. 나는 MB정권의 두려움이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촛불에 대한 두려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민주주의에 자신이 없는 독재정권 스스로의 두려움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추구했던 소위 ' 잃어버린 10년 '에 대한 열등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그네들 스스로의 공포는 매우 폭력적이고 정신병적으로 표출된다. 사실 이러한 무지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이다. 사회적 인간 이전의 본능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공포이다. 내재된 본능인 폭력으로 표출되는 원초적인 무의식인 것이다. 따라서 법과 이성이 아닌 폭력과 본능이 앞선다. 현상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언가 나타나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단과 추측만으로 본능적으로 방어태세를 취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덤벼든다. 마치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무조건 두 팔을 바둥거리는 것처럼.

' 공익 '을 해할' 우려 '만으로 체포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고, 위험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에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니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니 안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야간에 촛불 들고 모이면 폭력적이 될 위험이 높으니 야간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마땅하단다. 아니, 아예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면 경찰 여럿이 뛰어와 에워싸면서 촛불을 강탈해 간다. 솔직히 이건 뭐 하다못해 무지로부터 오는 공포조차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유아기적 트라우마 혹은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조건 반사인가? 조건 반사는 학습능력이 있고 중추신경계가 발달한 포유류에만 나타난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학계에 보고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 내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 군대의 특수성, 국가안보, 정신전력, 한총련 '... 이번 공개변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 단어들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군대가 특수한 건 맞는데, 어떤 책은 불온하고 어떤 책은 온당할 정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특수하다는 건지? 불온서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전력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얼마만큼 위해한지? 한총련이 군 의식화 작업의 일환으로 ' 군에 도서보내기 ' 사업을 계획 중이던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그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서적목록을 근거로 불온서적을 지정한 거라는데, 그에 앞선 실천연대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관련 첩보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해당 ' 사업 의 실체나 물증은 없단다. 보이지도 않는 실체에 화들짝 놀라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갖은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가? 재판관들께서도 이것을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국방부에서 기껏 준비한 변론이란게 이 정도였다.

이공현 재판관 불온서적이 반입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이 제기되거나 장병들 정신전력유지에 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국 방 부 지난 2~3년간 6건의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내에서 토의시간 등에 ' 미제의 앞잡이를 몰아내자 '는 발언을 하거나, 영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공현 재판관 그건 의사 표현의 자유고, 의사 형성의 자유는 별개인데... 지금 그 구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국 방 부 서적을 들여오거나 읽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알권리나 의사형성의 자유라는 것이 군기, 전투준비태세를 유지, 책임지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보호범위는 아닙니다. 부잣집 이등병이 화장실 가는데 에쿠스를 타겠다고 영내에 에쿠스를 들여오겠다면...

이공현 재판관 (답변 끊으며) 지금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 거에요...

{ 좌중 웃음 }

근데 사실 이번 공개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의외로 낡은 서랍속의 ' 특별권력관계 이론 '이었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은 군주의 수족들일 뿐이고 법치주의 따위의 보장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조직폭력배를 설명하는데나 적합한 군국주의 시절의 이론이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어서 특별할 뿐이지, 조직체라는 것을 싸잡아서 조직폭력배들처럼 특별하게 취급하자는 것은 프로이센 시대에나 잠깐 거들먹거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왜 2009년 대한민국에 자꾸 적용하려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강욱 변호사께서 역설하셨듯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로 특별하게 취

MB정권이 스스로 실체 없는 공포 속에 폭압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공포와 폭력의 악순환은 우리를 또한 공포로 몰아넣기도 한다. 일종의 정치 수법이다. 자신들의 공포를 공포 그대로 폭력적 본능으로써 표출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쉬워지는 수법.

급하면 되는 것이다. 왜 바깥세상의 헌법과 법률로부터 벗어나 따로 놀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특별함 ’뒤에 숨어서 음흉한 일들을 자행했던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고쳐나갈 생각들이나 좀 해야지 않을까? 어쨌든 군대의 특수성을 특별권력관계라는‘ 시대착오적으로 ’단순편리한 이론으로 자꾸 합리화 해보려는 국방부 측... 급기야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강拟拟 교수는 이렇게까지...

이강국 소장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극복된 이론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특수한 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보장 문제를 법익형량의 문제로 풀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온서적이라는 것들이 군의 전력에 어떤 위해가 되는지 실증적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인데요.

강○○ 교수 그건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인들이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기절했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좌중 웃음)...후략

이강국 소장 참고인께서 지금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잠시 기절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 점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강국 소장님은 강拟拟 교수의 개념이 기절해 있는 상황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이다. 나머지 지루할 정도로 구차한 법리를 들이대며 이번 헌법소원의 부적격을 주장하는 논점은 거론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한 예만 들어보자면,

이동흡 재판관 군인이 되고 1년이 안된 청구인이 있는데 이것도 청구기간 도과인가요?

국 방 부 장교이고 당연히 군복무규율에 대해 알았을 것이고 안 때로 따지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동흡 재판관 구체적인 규율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는데?

국 방 부 교육이 있었고 교육내용 중에 알았다는 확인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문가인 법무관들입니다.

이동흡 재판관 나도 왕년에 법무관 해봤지만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알죠?

{좌중 웃음}

점심을 거른 채 방청해서인지 대체로 한말 또 하고 또 하는 진행이 좀 유난해서인지 다른 방청 때보다 유난히 배도 고프고 졸렸지만, 간간이 주옥같은 내용에 귀가 솔깃해지면서 정신을 차리기도 했다.

목영준 재판관 병역의무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본권제한이 있지 않나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의무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 제한일뿐 인 것 아닌가요?

오동석 교수 도서에 대한 문제뿐 만이 아니라 기본권제한의 모든 부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합니다. 단지 정신전력,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번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더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의 측면에서 필요한 고민일 것입니다.

아~ 오동석 교수님 진짜 존경합니다. 머릿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참고로 오 교수님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거의 1시간에 가깝게 진술과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반면 강拟拟 교수는 자동으로 독경하는 기계가 있다면 아마 그랬을 법한 말투로 진술하고 재판관들로부터 질문 세 번인가 달랑 받고 후다닥 끝났다. 그 중에 하나가 위에 적힌‘ 특별권력관계 잠시 기절 ’이었고... 좋아, 내친 김에 강拟拟 교수 제2탄,

송두환 재판관 불온의 개념을 유지, 적용한다면 명확성을 좀 더 확보해야 할텐데 어떻게?

강○○ 교수 불온은 충분히 그때그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 이게 어떻게 명확하다는 것인지요. }

MB정권이 스스로 실체 없는 공포 속에 폭압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공포와 폭력의 악순환은 우리를 또한 공포로 몰아넣기도 한다. 일종의 정치 수법이다. 자신들의 공포를 공포 그대로 폭력적 본능으로써 표출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쉬워지는 수법. 하지만 깜깜한 허공에서 두려움에 휘두르는 주먹은, 막상 촛불을 밝게 켜서 정신 차리고 보면 폭력과 폭압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에 허우적대는 눈먼 발악일 뿐이다. 그들에게 곤봉, 방패, 물대포를 앞세우고 법의 가면을 쓴 폭력의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원칙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사람 사는 참세상을 향한 열망이라는 순수한 힘이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촛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까닭이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책임 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보며

글 _**조성오** 회원 · 법무법인 정평, 환경위원회 위원장

1. 들어가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보다 인간의 무모한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人災)는 더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피해발생의 경우 사고발생 이후의 처리과정과 사후 책임규명 과정이 더욱 중대할 수 있다. 천혜의 사구(砂丘)가 발달한 충청도 대표 관광지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및 기름유출사고는 천문학적인 피해규모로 광범한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을 만들어내었다. 이런 사고는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와 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은 이러한 대규모 환경파괴 사고 및 원인제공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 정부는 보상절차의 주도권을 IOPC에 모두 미루고 선보상을 포기했기에 적극적 대응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주민들은 직접 피해보상청구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내려진 결정은 마지막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원이 가해자인 대기업과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의 분쟁절차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적용을 하는지 엿 볼 수 있게 한다.

법원이 결정한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는 구 상법 제746조(현행 상법 제769조) 후단이 정하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청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에서 삼성중공업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마저 빼앗는 결정을 한 셈이 되어버렸다.

피해지역주민들의 피해접수를 제대로 접해보고, 형사책임의 유죄판결여부 및 사고발생경위 등을 제대로 심리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안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했다고 본다. 항고절차에서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될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문제에 있어 피해사실의 광범성과 심각성을 고려하고 가해선박의 무모한 항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가해자의 책임제한을 엄격하게 판단하기를 바랄뿐이다.

2. 사실관계

가. 예인선단의 구성

삼성중공업은 삼성물산 소유의 크레인 부선 삼성 1호(높이 140m의 3,000t급 크레인이 선적되어 있는 11,828t급 부선), 예인선 삼성 T5호(292t), 작업선(anchor선)인 삼성 A1호를 임차하여, 그 관리, 운항, 크레인 작업 등의 업무를 협력업체인 보람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삼성 중공업의 사업장인 거제 조선소에서 사용해 왔다.

삼성물산은 2007. 11.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대교 건설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삼성 1호, 삼성 T5호, 삼성 A1호를 역임차하였고, 거제에서 인천까지의 예인 항행을 위해 삼호아이앤디로부터 삼호 T3호를 임차하여 위 선박 4대로 예인선단을 구성하였다. 이 때 예인선단의 관리, 보수 및 운항(거제조선소로부터 인천대교 공사현장까지 및 인천대교 공사 현장으로부터 거제조선소까지)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예인선단은 2007. 11. 27. 거제조선소를 출발하여 인천대교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고 2007. 12. 6. 11:00까지 인천대교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출항

위 예인선단은 2007. 12. 7. 14:50 인천항을 출항하여 거제 조선소를 향하였다. 당시 삼성중공업의 직원인 신扶扶 은 인천 대교 현장의 작업 종료를 확인한 다음 예인선단이 출항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으며, 역시 삼성중공업의 직원인 최扶扶 은 보람 주식회사로부터 출항 보고를 받았다.

크레인 부선의 선장은 김扶扶 , 주예인선인 삼성T5호의 선장은 조扶扶 이며, 이들은 모두 보람 주식회사 직원이었고, 부예인선인 삼호T3호의 선장은 김扶扶 로서 삼호아이앤디 직원이었다. 삼성중공업에서 작성된 선내안전운항 수칙에 의하면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는 크레인 부선의 선장인 김扶扶 이었다.

예인선 삼성 T5호는 크레인 부선의 선수 좌측, 예인선 삼호 T3호는 크레인 부선의 선수 우측에서 각각 400

천혜의 사구(砂丘)가 발달한 충청도 대표 관광지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및 기름유출사고는 천문학적인 피해규모로 광범한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을 만들어내었다. 이런 사고는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와 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은 이러한 대규모 환경파괴 사고 및 원인제공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고 있을까?

미터에 달하는 예인줄로 연결되었으며, 크레인 부선 후미에는 작업선 삼성 A1호가 약 200미터 간격을 두고 뒤따르고 있어, 전체 예인선단은 전후 약 700미터에 이르렀다.

다. 출항 전 기상 예보

인천기상대는 2007. 12. 6. 09:00부터 16:50경까지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하여 인천 등 경기 남부 서해안 해상 날씨에 관하여 2007. 12. 6. 밤부터 2007. 12. 7. 까지 해상에 돌풍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해상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고, 서해 중부 앞바다의 바람은 2007. 12. 6. 오후 9~13m/s, 2007. 12,. 7. 오전 9~13m/s, 오후 8~12m/s, 2007. 12. 8. 오전 7~11m/s 정도로 불겠다는 기상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고로, 풍속 8~10.7m/s는 보퍼트 풍력 계급 5, 풍속 10.8~13.8m/s는 보퍼트 풍력계급 6에 각 해당하는바, 예인선단이 보험가입을 위하여 받은 보험 조사 증명서에는 보퍼트 풍력계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출발을 위한 예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과 보퍼트 풍력계급 6을 피항하여야 하는 최대 보퍼트 풍력계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출항 직전인 2007. 12. 6. 13:46경 보람 주식회사 직원 정抆抆는 예인선단의 책임자인 김抆抆에게 기상 악화에 대한 문자 메시지(당일 오후 최대 풍속 13m/s, 파고 1~2m, 다음날 오전 최대 풍속 13m/s, 파고 1.5~2.5m)를 보냈다.

라. 출항 이후 사고 까지의 상황

출항 11시간 후인 2007. 12. 7. 02:00경 예인선단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북서방 해방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이즈음 기상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최대 풍속 19.0m/s, 파고 3.4m에 달하였고, 강풍 때문에 예인선단은 동쪽(서해안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동일 새벽 04:45경 위 김抆抆, 조抆抆 등은 서로 무선 교신을 하여 인천 서수도 방면으로 피항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해 우변침을 시도하였으나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예인선단이 동쪽(해안쪽)으로 계속 밀려가면서 피항에 실패하였다. 그 와중에 예인선과 크레인 부선의 전후 위치가 뒤바뀌는 등 예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

동일 05:23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예인선단의 비정상적인 운항 상황을 인지하고, 해상에서의 긴급 구난 호출 용도에 사용되는 VHF 채널 16으로 2회에 걸쳐 예인선단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받

지 못하였다.

05:50경부터 삼성 T5호에 장착된 레이더는 해당 해역에 정박 중인 유조선과의 충돌 위험을 알리는 경보를 울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는 06:09경 자체 레이저를 통해 예인선단의 접근 및 충돌가능성을 인지하고, 06:14경 예인선단과 교신하기 위하여 VHF 채널 16으로 호출하였으나 예인선단은 응답하지 않았다.

06:20경 대산해상관제센터는 삼성 T-5호 선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하여 휴대 전화를 통해 대형 유조선이 항로 전방에 묘박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안전 운항 조치를 요구하였다. 06:27경 대산해상관제센터는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교신하여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허베이스피리트호는 06:30경 VHF 채널 16으로 예인선단을 호출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06:40경 예인선단이 유조선 0.4마일 전방까지 떠밀려가자 삼성 T5호는 기관 출력을 최대로 올리고 북서풍과 맞서면서 서쪽(해양방면)으로 크레인 부선을 끌고 가기로 결정하고 삼호T3호 선장에게 300도로 변침할 것을 지시한 후 대각도로 우변침하여 약 10여분 운항하였으나 06:52경 삼성 T5호와 크레인 부선을 연결한 예인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다. 그러자, 크레인 부선은 닻을 투묘하여 부선이 유조선 방향으로 떠밀려 가는 것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닻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제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부예인선 삼호T3호의 예인력으로는 강풍에 떠밀려가는 크레인 부선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었다.

07:06경 크레인 부선 삼성1호는 정박 중인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수 부분을 크레인 붐대 하단 후크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유조선의 좌현 쪽으로 밀려가면서 유조선 좌현 선체 부분을 크레인 부선 좌현 선수 모서리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는 등 모두 9곳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좌현 1번, 3번, 5번 원유 탱크가 파열되어, 적재 중이던 원유가 인근 해상에 배출되었다.

3. 법원의 선박책임 제한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009. 3. 23. 17:00에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결정을 하였고, 2009. 3. 25. 공고되었다.

구 상법 제746조(현행 상법 제769조)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선박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로부터 발생한 물적 손해에 관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송○○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제한채권의 신고 기간을 2009. 6. 19. 18:00까지로 정한다.
4.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및 장소를 2009. 7. 15. 14:00 서울법원 종합청사 별관 남관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그리고 주요 결정이유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계산하면(이 사건 예인선단에 속하는 각 선박의 책임한도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2,307,776[=83,000 + 83,000 + (167,000 + 11,328×167) + 83,000] 계산단위(SDR,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가 된다[참고로 이 사건 신청일에 가까운 2008. 12. 5. 현재 환율인 1계산단위=2,186.44원을 적용하면 위 금액은 5,045,813,757원(=2,186.44 × 2,307,776 SDR,원 미만 버림)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금액은 위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이 분명하고, 신청인은 당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2009. 3. 11. 위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공탁일까지 연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5,634,200,895원을 당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결정하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주문 제2, 3, 4항과 같이 결정한다. "고 판시하였다.

4.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 배제 요건 해당 여부

가. 개요

구 상법 제746조(현행 상법 제769조)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이"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그 채권이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손해가 선박 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일 것
② 고의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책임 제한을 배제하는 요건인"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라는 표현은 1968년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The Hague - Visby Rules) 제4조 제5항 제e호에서 채용한" an act or omission of the carrier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라는 문구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박 책임 제한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제도이므로, 우리 법원의 판례 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선박 책임 제한 관련 판례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이 두 요건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나. 요건 ① – 선박 소유자 자신의 행위일 것

(1) 우리 대법원 판례

우리 상법 제 797조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제한 배제 요건을"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 "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배제 요건과 유사한 요건이다. 운송인의 책임 제한 배제가 쟁점이 되었던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 운송인 자신의 행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 보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제한 배제에 관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표기

선박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 기관 뿐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 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무모하게 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해 선박 소유자인 법인의 행위로 보아 책임 제한이 배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하게 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의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 조항의 배제 사유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 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 기관 뿐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 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위 사안은 운송인 회사의 관리직 담당 직원 2명(대리, 차장)이 운송 계약 내용과 달리 갑판에 화물을 선적하여 화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바, 대법원은 운송인 회사의 대리와 차장이 화물의 선적에 관하여는 사실상 회사의 의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갑판적 선적 행위를 운송인 자신의 행위로 보고 운송인의 책임 제한을 배제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에도 적용하여 볼 때, 선박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 기관 뿐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 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무모하게 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해 선박 소유자인 법인의 행위로 보아 책임 제한이 배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Ert Stefanie 사건(1988, 영국 항소 법원)

Ert Stefanie호의 선주 회사는 용선 계약에 따라 Ert Stefanie호를 용선자에 빌려 주면서 선박의 관리를 다른 회사(Sorek)에 일임하고 있었고, Sorek의 이사인 Mr. Baker가 선박의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용선자는 이 선박을 규소철의 운송에 사용하였는데, 선박 바닥 강판에 결함이 있어 규소철과 결합으로 독성 가스가 방출되어 선원 한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선주가 선박의 관리를 다른 회사에 일임한 경우 실제 선박 소유자가 아닌 관리 회사를 기준으로 선주의 실제 과오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고, 항소 법원(Court of Appeal)도 이를 유지하였다. 위 Lady Gwendoloen 사건에서 보았듯 법인의 경우 실제로 법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개인을 법인의 alter ego라 할 것이므로, 선박 관리 회사인 Sorek의 분신(alter ego)이라 할 수 있는 Mr. Baker의 선박 관리상의 잘못은 곧 관리 회사 Sorek의 과오가 되고, 관리 회사 Sorek의 과오는 곧 선박 소유자의 자신의 실제적 과오라고 보아 선박 책임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관리를 일임하였을 경우 선박 관리자의 행위를 선주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선박 관리자가 법인일 경우, 당해 법인의 의사를 사실상 결정하고 행위하는 개인을 법인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삼성 중공업은 본건 사고의 가해 선박인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 주예인선과 부예인선 등으로 예인선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 및 운항을 보람 주식회사에 위임하였으므로, 선박 책임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보람 주식회사의 행위를 삼성 중공업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인선단의 운항 및 선박 관리와 관련된 보람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위자를 보람 주식회사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보람 주식회사의 분신에 해당하는 직원의 행위가 후술하는‘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에 해당한다면 이는 곧 삼성 중공업의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보람 주식회사의 분신에 해당하는 자인지 살펴 보아야한다. 이 문제는 본건 선박의 운항 및 선박 관리와 관련된 평소의 의사 결정 및 관리 체계, 보람 주식회사의 규모 및 평소의 운영 실태 등 배경적인 사실 관계와, 본건 사고 직전(운항 결정 당시) 및 사고 당시 선박 탑승자들의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일응 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로 볼 때, 크레인 바지선 삼성 1호에 탑승하였던 보람 주식회사의 예인선단 책임자인 김扶扶 또는 보람 주식회사의 선박 관리 및 운항 책임자 등이 선박의 관리, 출항 결정, 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매뉴얼) 등을 책임져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식 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할 문제이지 책임 제한 개시 신청 절차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다. 요건 ② – 손해 발생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1) 우리 대법원 판례

‘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라는 요건은 항공 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조약 제25조에서 정한 운항자의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서도 동일하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대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책임 제한 조항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 증거로써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법원은 바르샤바 조약 제25조의 책임 제한 배제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책임 제한 조항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 증거로써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판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책임 제한 배제를 주장하는 자가 가해자(항공사 등)에게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 방법은 정황 증거로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2) Marion호 사건 (1984, 영국 상원 재판소)

Marion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하다가 닻을 올리던 중 닻이 해저의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이 손상되었다. 이는 Marion호의 선장이 송유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아니한 구판 해도를 사용한 결과였다. 선주는 선박의 관리를 다른 회사에 일임하였고 선박 관리회사의 책임자 이사는 해도의 갱신 등 해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선박의 선장에게 맡겨 두었고, 이에 관한 지시 및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중요한 설비(해도)를 선장이 알아서 입수하도록 방치한 선박 소유자의 부작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선박 관리를 담당한 회사가 별다른 체계적 통제 체제나 업무 분장 및 감독 관리 체계도 없이 특정 직원에게 그 일을 일임하였으므로, 그 직원의 행위는 바로 그 회사 자신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구판 해도를 방치하고 점검을 해태한 관리 회사 직원의 부작위는 곧 선박 소유자 자신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3) Saint Jacques II호 사건 (2002, 영국 여왕좌 법원 해사재판소)

Saint Jacques II호 사건은 선박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인바, 이건에서 법원은 항로를 습관적으로 역항행하면서 17세 소년 갑판원에게만 항해를 맡기고 잠을 자고 있던 선장 겸 선주의 행위에 대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다투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선박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였다.

책임 제한 절차는 선박 운항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법적으로 상한을 설정하여 선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충분한 보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법 및 헤이그-비스비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주의 책임 제한 배제는 선주 보호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절차는 소송에 비해 매우 간이한 방법으로 선주의 책임 제한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책임 제한 절차를 통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Saint Jacques II 사건은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1894년 해상법이 폐지되고 현재 우리 상법과 유사하게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규정한 1995년 해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해 가해 선박(Saint Jacques II호)의 선주가 책임 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건이다. Saint Jacques II호는 어선으로서 사고 당시 항로를 역항행하고 있었으며 선주이자 선장인 원고(책임 제한 절차의 신청인)는 잠이 들고 17세 갑판원이 조타실에 있는 동안 유조선과 충돌하였다. 이 사건에서 선주는 간이 절차인 책임 제한 절차를 통하여 책임 제한 명령을 받아 내려 하였는바, 원심은 책임 제한 명령 발령을 거부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영국의 여왕좌 법원 해사재판소(Queen's Bench Division, Admiralty Court)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선박 소유자가 과연 그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하여 실제로 인식하고 행한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간이 절차가 아닌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통하여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고 보았다. 당시 원고는 사고 전에도 항로를 단축하기 위해 역항행을 반복하여 왔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법원은‘ 피항소인(피해자)이 정식 재판에서 항소인(책임 제한 절차 신청인)의 책임 제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항변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간이 절차를 통하여 책임 제한 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에 관한 조약」제6조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해할 여지가 있다 ’고 판시한 것이다.

과연 보람 주식회사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김○○ 또는 다른 책임자가 손해 발생의 개연성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인바, 위 사실 관계만으로도 다음과 같이 이들에게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과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을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VHF 교신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예인선단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간에 교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VHF 채널 16은 해상에서 긴급 구난 구호를 위한 교신 설비로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다.

(4) 소결

‘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 요건은 엄밀하게는‘ 손해 발생 개연성의 인식 ’과‘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양자는 한 가지 요소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손해 발생 개연성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심리 상태를 재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객관적으로 제출된 증거에 의해 추단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Saint JacquesII 호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의 명백성의 정도에 따라 이 둘의 성립 여부는 종종 그 운명을 같이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위험이 보다 명백한 것이었을수록 무모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당시 손해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 인식에 대한 입증은 선주 혹은 선주의 분신(alter ego)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명백한 위험의 존재와 무모한 행위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과연 보람 주식회사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김○○ 또는 다른 책임자가 손해 발생의 개연성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인바, 위 사실 관계만으로도 다음과 같이 이들에게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과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을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본다.

① 감항 능력 미확보(특히 예인줄의 인장 강도 미확보)

본건 사고는 삼성 T5호와 삼성 1호(크레인 바지선)을 연결하고 있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삼성 1호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삼성 1호에 탑재된 해상크레인이 허베이스피리트 호에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끊어진 예인줄은 2007. 6. 교체된 것으로서, 교체 전에는 러핑 와이어로 쓰이다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와이어를 재활용한 것임이 형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Smjeli호 사건에서 판시하듯, 선박 소유자(혹은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는 선박의 감항 능력을 구비할 의무가 있다. 본건과 같이 선박의 통행이 잦은 연안을 따라 대형의 크레인을 예인하는 항해를 해야 하는 선박이라면 충분한 예인줄의 강도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예인되는 선박이 높이 140m의 크레인을 선적한 11,828t급 크레인 바지선이고 예인선은 수백톤에 불과한 상황에서, 선박의 통행이 잦은 서해안 연안을 따라 거제도까지 예인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므로 충분한 강도의 예인줄이 구비되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여 예인줄이 끊어진다면 해상크레인이 타 선박과 부딪힐 위험이 일반 선박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게 되므로, 보람 주식회사 소속의 김○○ 혹은 선박 관리 책임자는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선박 관리(충분한 강도의 예인줄 구비)를 해태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② 악천후에서의 출항 결정

예인선단이 출항하기 이전인 2007. 12. 6. 아침부터 인천 기상대는 2007. 12. 6. 밤부터 서해상에 돌풍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고, 서해 중부 앞바다에 9~13m/s 가량의 바람이 불겠다고 기상 예보를 발표하였다. 이는 보퍼트 풍력 계급에 의할 때‘ 출발을 위한 예인 ’을 하지 않도록 정한 풍속을 초과하는 것이며 만약 10.8m/s 이상의 바람이 분다면 이는 피항하여야 하는 최대 풍력계가 된다. 더구나 본건의 경우 선단의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높이 140m인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예인하는 항해가 예정되어 있어 바람의 영향을 일반 선박보다 현저히 더 많이 받을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람 주식회사의 김○○ 또는 선박 관리 및 운항 책임자는 출항을 결정하였다. 서해안 연안과 같이 많은 배들이 왕래하고 정박하는 곳에서 이러한 악천후에 출항을 결정한 것 자체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VHF 교신 설비 사용 및 관리 상의 부작위

본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VHF 교신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예인선단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간에 교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VHF 채널 16은 해상에서 긴급 구난 구호를 위한 교신 설비로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다. 만약 예인선단의 VHF 교신 설비가 평소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선박 관리상의 잘못이다.

선박 운항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행위이다. 따라서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치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Marion호 사건에서는 구 해도를 비치한 것이 대해 선주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여 선박 책임 제한을 배제하였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박 운항에

피해자들로서는 삼성 중공업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에 선박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방과 증거 발견의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다.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무모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본건과 같이 대형 크레인을 예인하는 선단이 다른 선박의 항해가 잦은 연안을 항해하여 거제도-인천, 인천-거제도를 오가는 항해를 한다면, 그 위험은 더욱 배가한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거제도-인천, 인천-거제도를 오가는 상황에 VHF 교신 설비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항 중 어떤 긴급 상황이 오더라도 긴급 구난 요청을 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선박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항해를 하면서도 타 선박과 교신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VHF 교신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보람 주식회사 김扶扶 또는 선박 관리 책임자의 행위는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이를 방치한 부작위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공방이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VHF 교신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책임 제한 절차가 아닌 정식 손해 배상 소송 절차에서 증거 조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불충분한 선원 교육 혹은 부적절한 행동 요령(메뉴얼)의 가능성

만약 선박의 교신 설비 등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선원들에게 그 사용에 대해 적절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역시 무모한 부작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났을 때의 피항 요령 혹은 타선박과의 교신 요령에 대해 메뉴얼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절하였다면 이 역시 선원 교육을 담당한 보람 주식회사의 무모한 부작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전항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충분하나, 정식으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절차가 아니고서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사실을 알아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 제한 절차가 아닌 정식 소송 절차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다.

⑤ 항로 인근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의 현황에 대한 파악 의무 해태

예인선단은 선박의 통행이 잦은 서해안 연안을 따라 항해를 하고 있었다. 더구나, 서해안 연안은 유조선의 정박이 잦은 곳이다. 따라서 높이 140m 의 크레인을 선적한 바지선을 예인 항해하는 전체 길이 700m 가량의 예인선단으로서는 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보람 주식회사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직원이 그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면 이 역시 무모한 부작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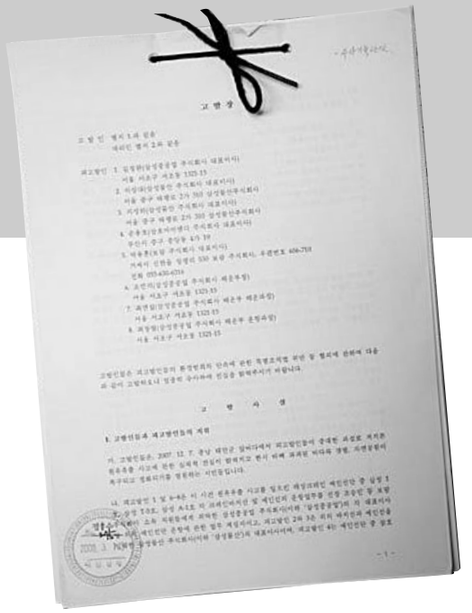

5. 결론

본건 사고는 최악의 재앙으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지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생태계에 잠재되어 있던 피해가 점점 가시화되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 결정은, 피해자들이 주장 한번 제대로 해 볼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삼성 중공업의 책임 제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너무도 무성의한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생각해 보건대 피해자들의 재산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천부인권이다. 비록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제도가 선박 운항의 위험을 법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상충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침해된다면, 이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Saint Jacques II호 사건에서의 영국 법원의 입장은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 제한 절차가 매우 간이하게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책임 제한 배제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조차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한다면 피해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게 된다 ”고 판단하여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는 매우 타당하다.

본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삼성 중공업 측 예인선단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대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피해자들로서는 삼성 중공업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에 선박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방과 증거 발견의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한 기회의 제공조차 없이 삼성 중공업의 책임을 원 결정과 같이 제한하고 모든 소송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침해이자, 상법상의 선박 책임 제한 제도 명문 규정 위반이다.

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글 _**이광철** 회원 · 법무법인 정평, 통일위원회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고합1165 등)은 강진拟, 최한拟, 문경拟, 곽동拟 등 네 명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세 개 사건이 병합된 것이다.

2008고합1165 사건이 중심뼈대로써, 공소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 이북 [1])이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단체이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전제하면서,

① 강진拟, 최한拟은 2001. 12. 15.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를 구성하고(실제로 실천연대가 출범식을 개최한 것은 2000. 10. 21.이었는데 검찰이 실천연대가 규약을 개정하였다면서 2001. 12. 15.을 들고 나온 것은 공소시효 부분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② 문경拟, 곽동拟는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하였으며, ③ 피고인들의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의 사실로써, 대의원대회, 615학원, 전진일꾼대회 등, 조직원 사상학습 전개, 이북의 핵실험 옹호, 김정일 선군정치 찬양, 한국 변혁운동 이론에 따른 대중투쟁, 언론기고 및 통일학술제전 개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④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 소지의 부분으로써, 네 명의 피고인이 쓴 책과 언론기고문, 메일로 주고받은 한글 파일 등을 문제삼고 있다(이 부분 증거의 양만 A4 용지 몇 만 쪽에 이르고 있다).

⑤ 강진拟, 최한拟의 ' 북경회담 관련 회합 · 특수잠입 ·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부분으로써, 강진拟가 2004. 12. 21. 북경에서 리창덕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 일부를 대화록으로 구성하여 배포한 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회합 · 특수잠입 ·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라는 것이다(강진拟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 리창덕을 만났다).

⑥ 피고인 최한拟의 ' 이북 공작원 김용拟 와 통신 · 연락의 점인데, 이 김용拟라는 자가 보낸 이메일안에 로동신문이 기사 7건이 있다는 것이다(참고로 최한拟은 김용拟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검찰도 김용拟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⑦ 2007. 12.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강화도에서 발생한 총기탈취 및 초병살해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곽동기가 UCC를 제작하여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1987년 김현희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같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선거에서 테러 등이 발생한 예를 들면서 이런 선거테러에서 득을 본 세력은 언제나 친미세력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점을 유의하여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고도 평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 부분을 국가보안법상의 허위 사실 날조 · 유포라고 기소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2008고합1458 사건의 기소 내용은 2005. 4. 8. 경 강진拟가 중국 심양에서 리창덕을 만난 것을 두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수탈출 · 회합 · 특수잠입이라는 것이다(강진拟는 이번에도 통일부 승인을 받아 리창덕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2009고합78 사건은 실천연대 홈페이지의 관리 ·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한욱이 실천연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적표현물에 대한 삭제명령을 불이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2. 재판부의 판단

가. 면소 및 무죄 부분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습관적 용어사용에 대하여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의 이북 내지 한반도 이북을 뜻하는 용어다. 이북으로서는 흡수통일을 연상할만한 용어인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고, 평화통일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될 것이고, 여기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1992. 2. 19.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민족내부 특수관계라고 인정하고 제1조에서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명란에서는 남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적어도 이북을 북한으로 부르지 말자는 취지는 이 합의서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길고 번거롭다면, 이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긴다.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 소지의 부분 가운데 강진○가 "반미 반정부 투쟁인 촛불항쟁에 적극 나서자"라는 취지의 〈시대평론〉 2008년 여름호 소지 부분, 최한○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문건 소지 부분, 문경환의 '북한공부를 하자'라는 제목의 문건 반포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일단 이적단체 구성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판결을 하였다.

또한 곽동拟의 UCC를 제작하여 반포한 부분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 소지의 부분 가운데 강진拟가 " 반미 반정부 투쟁인 촛불항쟁에 적극 나서자 "라는 취지의 <시대평론> 2008년 여름호 소지 부분, 최한욱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문건 소지 부분, 문경환의 ' 북한공부를 하자 '라는 제목의 문건 반포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유죄판단의 이유 요지

재판부는 이북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인용[2]하여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보았다. 또한 실천연대의 이적성에 관하여서도 역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인용[3]하면서 실천연대 또한 이적단체라고 보았다.

일단 이렇게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본 이상에는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는 일사천리이다. 실천연대가 한 모든 공개적인 활동, 실천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실천연대의 회원인 네 명의 피고인이 쓴 글, 강연, 활동들 모두 이적성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임은 필연적 귀결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적법하게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가 이북사람을 만난 북경, 심양회동에 대하여도 같은 논리로 지령을 수수하고 돌아와 지령에 따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한 것으로 보았다.

2)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 판결은 몇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와 무죄를 판결한 점에서 다소간 평가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몇 가지 표현물들에 있어서 무죄가 난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이 판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 판결에 대한 검토

당초 편집자가 필자에게 요청한 취지는 위 실천연대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으로 평석은 언감생심이고,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여 느낀 몇 가지 소회를 적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가. 무죄가 난 부분의 역설

이 판결은 몇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와 무죄를 판결한 점에서 다소간 평가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몇 가지 표현물들에 있어서 무죄가 난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이 판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표현물들에 있어서 무죄가 난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 무죄가 난 몇 가지 표현물들의 경우 다른 표현물과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길래 이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내심의 의사와 동기를 가지고 글을 쓰거나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선데이 서울 "과" 민법총칙 "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면 같은 성질의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앞서 본대로 ① 강진拟의" 반미 반정부 투쟁인 촛불항쟁에 적극 나서자 "라는 취지의 시대평론 2008년 여름호 소지 부분, ② 최한拟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문건 소지 부분, ③ 문경拟의 ' 북한공부를 하자 '라는 제목의 문건 제작 반포 부분인데, 이러한 문건에 나타난 표현들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거나 취득한 다른 문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

이적표현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냐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인가? 이 기준은 쉽게 이야기하면 "민족의 반쪽인 북한"하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하에 있는 이북"하면 이적표현이라는 논리다.

라, 피고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생각, 이북에 대한 생각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표현의 강도를 보고서 어떤 것들은 이적표현물이고, 어떤 것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나. 무죄가 난 부분의 더 큰 문제점

이적표현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 "이냐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인가? 이 기준은 쉽게 이야기하면" 민족의 반쪽인 북한 "하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하에 있는 이북 "하면 이적표현이라는 논리다. 별다른 폭력적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 하에 있는 이북 "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한다니, 이게 법적인 논변으로써 타당한 것인가?

필자는 우리 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겨우(죄송하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 다른 사건에서 보여주는 법원의 치밀한 사실인정과 정치한 법리전개를 익히 보아온 필자로서는 이러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엉성한 논법이 정말로 의아스럽다.

필자를 포함한 이 사건의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치국가적 형법질서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利敵)요건이 충족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판단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우선 이북이 적(敵)이어야 한다. ② 그리고 개별 공소사실상의 행위들이 그러한 적인 이북을 이(利)롭게 하여야 한다. ③ 앞서

4) 이롭게 한다는 부분은 이롭게 한다는 개념의 다의성과 광범성에 관한 것으로 역시 법집행자의 자의와 법적용의 형평성에 심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헌법적 보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5) "종래 대법원이 국가보안법과 북한에 대하여 표명하여 온 견해 즉,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 · 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라는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그것이고, 이 사건의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판결문에 거시하고 있다.

의 ①, ②문제와는 별개로 개별공소사실상의 행위들이 폭력이나 무력이 아닌 적어도 말과 글로써 이루어진 활동들이라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그러한 개별공소사실상의 행위들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등 이 세 가지가 정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보여준 이북의 이중성격론 등 법원의 논리전개의 불철저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호인단의 기준제시에 대하여 응답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예의 재판부는 기존의 그 불철저한 판례를 예시하면서 예전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논거로써 이북에 대한 반국가단체성, 이적성을 판단하였다.

다. 이적성의 판단

위 세 가지의 기준에 관하여 여기서는 이북을 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만 따져 보자.[4)]

이에 관한 우리 법원[5)]과 헌법재판소의 입장[6)]은 이른바" 이북 이중성격론 "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생각 한 번 해 보자. 이북이 무슨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하나의 존재에서 적과 아군이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도대체 타당한가? 적이면 적인 것이고, 아군이면 아군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대법원과 헌법

6) 원래 이 판시의 저작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바48결정은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이북을 적으로 보는 논거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과장되어 있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도 매우 바림직하지 못하다. 이북을 적으로 본다는 데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 내지 핵 등을 자주 운운하지만, 이미 재래식 무기의 경우 이남이 이북의 군사력을 앞섰다고 선전한 것이 언제적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재판소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적과 아군 두 가지가 병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적 결함은 결국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용의 평등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즉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의하면 이북과 관련된 행위가 과연 적으로서의 이북에 관한 행위인지, 아니면 아군으로서의 이북에 관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에 달리게 되고 그 결과 친북적 행위들이 어떤 경우에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인지가 매우 불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법집행자의 자의와 법적용의 차별성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이북을 적으로 보는 논거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과장되어 있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도 매우 바림직하지 못하다. 이북을 적으로 본다는 데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 내지 핵 등을 자주 운운하지만, 이미 재래식 무기의 경우 이남이 이북의 군사력을 앞섰다고 선전한 것이 언제적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핵의 경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듯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핵은 이북의 위협용, 엄포용일 뿐이다. 이북이 만일 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상대편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북을 적대시해 온지 어느덧 60년이 넘어가고, 그러한 미국을 상대로 대화의 카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핵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북의 진심을 이해하기는 커녕, 이북을 말살하려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혈안이다. 이것이 평화통일을 명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북을 반국가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면 이남이 적화되고, 광화문에 인공기가 펄럭이게 될까? 참 어이없는 생각이다. 이북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흡수통일론자들, 국가보안법 맹신주의자들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이북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의 특장이 아닌가? 그곳에서 말과 글로써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 갑자기 잡아가고 구속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세련된 일이 아닌가?

관련하여 대법원 판시 및 이번 사건의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나온 다음과 같은 설시의 문제는 꼭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

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조선노동당 규약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980년의 당규약이다. 그러나 이북은 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경제난 등 이북이 처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80년대 이후 이북 내 · 외부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낡은 문장, 사문화된 조항인 것이다. 만약 이북이 당대회를 연다면, 이 조항은 빠질 것이 명백하다. 왜냐면 1972년 헌법 제5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992년 헌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이렇게 노동당 규약에는 남아 있으나, 헌법 개정시에 폐기되어 그 규약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할만한 것은 또 있다. 노동당규약의 다음 조항이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이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의 영도체제가 굳어진 곳이다. 지난 6. 15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공단으로 조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북의 최고 수뇌부는 이남과의 대결구도 대신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이북의 공식 문헌에는‘ 맑스-레닌주의 ’라는 언급이 없다. 이미 오래전에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로 대체되었다. 김일성주의는‘ 맑스-레닌주의 ’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북의 사정에 맞는 독창적인 혁명이론이라는 것이 이북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런 이북의 입장 변화에 따라 1972년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는 조항은 1992년 헌법 개정 때는 삭제되었다. 요컨대, 이북의 체제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인 적화통일조항과 맑스-레닌주의 조항이 이렇게 당규약에는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는 논거틀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일종의 완고함 내지 사실확인작업의 불성실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의 영도체제가 굳어진 곳이다. 지난 6. 15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공단으로 조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북의 최고 수뇌부는 이남과의 대결구도 대신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북이 싫고 혐오스러운 것과 이북이 적이냐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선군정치를 설사 옹호하면 또 어떤가? 그 정도의 생각마저도 포용하고 인정하자고 우리 헌법의 어버이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결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다른 것은 토론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야 할 대상이지, 형벌로 다스릴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8년전에도 존재했던 국정원은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수사하지 않았고, 8년 전에도 존재했던 검찰은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기소하지 않았다. 법률가 10명중 6명은 “새정부 출범후 법치주의 후퇴”(〈법률신문〉 2009. 4. 28.자 기사)를 느낀다니 법치주의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 뿐은 아닌듯 하다.

4. 글을 마치며

실천연대 사건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느낀 생각은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것이었다. 법치주의는 법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용의 형평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한다. 이러한 법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용의 형평성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은 누구도 법을 준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법치주의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같은 행위가 언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언제부턴가 감옥을 살아야 할 범법행위가 된다. 통일부 장관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가서 만난 행위도 언제부터인가 처벌대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언제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대통령 한분이 새로 취임한 것 뿐이다.

8년전에도 존재했던 국정원은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수사하지 않았고, 8년 전에도 존재했던 검찰은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기소하지 않았다. 법률가 10명 중 6명은“ 새정부 출범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2009. 4. 28.자 기사)를 느낀다니 법치주의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 뿐은 아닌듯 하다.

좀 맘에는 안들더라도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놔두자! 실천연대, 미네르바, 피디수첩, 거기다가 최근의 범민련 사태. 말을 하는데다가 매질을 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 말로 하는 것은 말로 제압하여야지 거기다가 형벌을 주는 것은 실력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다. 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헌법정신이요,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미디어 관련 4대 법안

정리 _민변 입법감시TF

지난 2월 국회에서는 MB 악법 중 최대 쟁점이 되었던 미디어 관련 4대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필코 미디어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월 국회에서 쟁점이 될 미디어관련 4대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 · 중 · 동 방송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6.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4)

나. 법안 요지

●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겸영제한 폐지

● 대기업이 뉴스통신사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하도록 허용

●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 '으로 통합

다. 의견

●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겸영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거대 족벌(재벌) 신문사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사(이하' 조 · 중 · 동 '이라고 함)의 방송사 진출을 허용하고, 아울러 다른 일간신문사나 뉴스통신사의 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고 사설 통신사의 영향력이 대폭 증대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 · 중 · 동 등 거대 신문사에 의한 복합 언론재벌이 탄생하게 되어 한국 사회의 여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신문의 기능보장 '(제21조 제3항)을 침해할 것이다.

● 대기업이 뉴스통신사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뉴스 도매시장 장악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재벌이 여론을 장악하고 사회적 약자의 여론시장 참여는 배제될 것이다.

●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으로 강제 통합하여 관변단체화함으로써 언론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이번 신문법 개정은 2006년 헌법재판소의 신문법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 헌재 결정에서는 오히려 신문, 방송의 겸영을 제한하는 것은 여론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신문, 방송의 겸영을 제한한 신문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등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제한하여야한다 "는 취지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은 여론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2006년 헌재 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외국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규제하는 경우 그 조건이나 방식이 나라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처럼 진입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신문의 독과점 지위에 대한 조사, 구분 없이 진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에서 조 · 중 · 동 신문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60~80%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조 · 중 · 동의 신문법상 자료신고의무 거부로 객관적인 영향력 측정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과점 지위에 있는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한나라당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신문이 여론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론다양성이라는 가치 훼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콘텐츠를 제공받

특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식 취득 한도를 현재의 30/100에서 49/100분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방송재벌(방송 사주)'의 탄생을 허용하고 있다.

아 이를 전달하는 기능에 주안점이 있고 여론 내용에 영향을 주는 콘텐츠 생산 기능은 신문이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다. 2006년 헌재 결정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여론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신문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도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신문, 방송 겸영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론다양성 지수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의 여론 영향력을 12.5%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다양성 지수 구성 과정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고 하면서 각 미디어의 역할을 재고하여 다양성 지수의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FCC는 2006년부터 다양성 지수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미 공청회와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2. 방송법 개정안(일명 "재벌방송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4.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

나. 법안 요지

●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 · 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 · 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

다. 의견

● 특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식 취득 한도를 현재의 30/100에서 49/100분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방송재벌(방송 사주) '의 탄생을 허용하고 있다.

● 대기업(재벌)과 신문사, 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의 주식 취득을 허용하

거대 독점 신문사와 재벌이 연합할 경우에는 더욱 더 여론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고(각각 20/100, 30/100 한도)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전면 삭제함에 따라 ' 재벌방송 '및 거대 복합' 언론재벌 '의 탄생을 허용하고 있다.

●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가 상호 겸영 또는 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의 주식 취득 한도를 현재의 33/100에서 49/100분로 대폭 확대 허용함으로써 방송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 (조 · 중 · 동 족벌 · 재벌 · 종교집단)신문 - 잡지(월간지) - 뉴스통신사 - 방송 - 케이블방송 - 위성방송 등을 복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재벌방송 및 언론재벌이 여론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자체 검열 '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철저히 봉쇄(무시)당할 우려가 크다.

● 거대 독점 신문사와 재벌이 연합할 경우에는 더욱 더 여론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 외국자본(외국 언론재벌)의 국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한 출자를 20/100 한도에서 허용하고,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를 49/100 한도에서 허용함으로써 자주적인 방송 주권이 침해될 것이다.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새로 허용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한나라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 전체적으로 2조 원 내외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 - '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를 근거로 함).

그러나 방송광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지상파 방송사업의 경우 이미 마이너스 성장단계에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GDP 수준을 고려할 때 자본의 추가 투입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가정을 기초로 한 근거 없는 예측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1996년 ' 텔레커뮤니케이션법 ' 이 통과된 후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오히려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 미디어그룹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신문, 방송 겸영규제 완화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복합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계적인 복합미디어 기업들의 주 매출은 영화, 드라마, 만화, 오락, 스포츠, 다큐 등의 판매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신문의 주 기능인 보도 분야는 경제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외국의 글로벌 미디어기업은 미디어 분야에 집중되고 특화된 자본구조와 투자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혀 이질적인 다양한 분야들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양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나 콘텐츠와 시스템, 노하우 등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은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 한나라당은 OECD 국가 중 신문과 방송의 원천적 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겸영

실제로 미국에서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이 통과된 후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오히려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 미디어그룹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의 법제를 보면 공통적으로 각국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일관된 목표 하에서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여론독과점 신문의 방송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이번 한나라당 개정안과 같이 신문시장에서의 독과점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FCC, 영국의 오프콤, 독일의 KEK 등 미디어 집중 현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규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하는 기관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반해 우리는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노력 없이 임의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가. 대상 법안

● 2008. 12. 3. 구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7)

나. 법안 요지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대한 대기업, 신문 · 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겸영 또는 주식 · 지분 소유금지 규제를 완화하여 그 소유를 49/100 (외국자본은 20/100) 까지 허용

다. 의견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미디어업계와 통신업계의 새로운 구도 변화를 선도하며 정치 ·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서비스이다.

대기업, 신문 · 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진출은 방송법에서 살핀 바와 같이 거대 방송재벌, 언론재벌 출현, 방송주권 침해라는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대상 법안

(1) 2008. 11. 3.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3)

(2) 2008. 12. 24.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7)

나. 법안 요지

- 사이버모욕죄 신설, 임시조치 규정 신설
- 인터넷 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실시 의무를 부과

다. 의견

-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할 형법상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모욕죄의 법정형 내에서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모욕죄 자체를 비범죄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모욕죄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가능케 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쉽게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 임시조치는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만, 임시조치가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시조치의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임시조치를 취하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할 형법상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모욕죄의 법정형 내에서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모욕죄 자체를 비범죄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되 이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해제하여 게시물을‘ 복구 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절차로 이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확대는 헌법상 권리인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2007년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악플 ’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익명성은 악의적이라기보다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 ”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모니터링 의무화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적 검열기관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서비스제공자가 면책을 위해 자의적으로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남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은 사이버상 권리침해의 피해는 광범위하고 확산속도가 빠르므로 피해자의 고소를 처벌요건으로 하면 시의적절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에서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주관적 명예감정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모욕행위가 비판이나 비평, 패러디 등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영역에 있으므로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과 판단에 이 문제를 우선 맡겨두어야지 수사기관이 나서서 모욕 감정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개입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비판적 의사표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급속하게 위축될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정리 _민변 입법감시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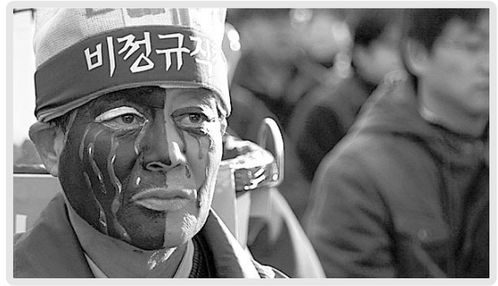

이 글은 2009. 5.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민변의 의견서입니다.

I. 서론

2009년 4월 1일 정부는 사회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기간제법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한도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래 파견기간과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의 합의로 연장 가능한 기간을 각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총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 실체적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 측면에서 노사관계의 한 축인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가장 기본적인 의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체적 측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개정안 제출의 근거로 내세운 소위‘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 대량해고설 ’은 구체적인 검증 절차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과 파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체 근로자를‘ 저임금 비정규직 ’으로 고착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된 근로자는 영원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게 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도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 결과는 고용구조의 악화와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은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의 개정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진지한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I. 개정안의 근본적 문제점

1.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2009년 7월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의 허구성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정규직 전환 효과를 만들기 위해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기간제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올해 7월로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량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명 대량해고설 ’을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의 최고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비정규직 실업대란설 ’은 구체적인 검증 절차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정부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2008년 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일자리 감축이나 도급전환 대신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답이 6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따라[1]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09년 7월에 기간제 근로자 100만 명의 고용기간이 일시에 만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면,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지 사용기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2009년 7월을 넘기면 2011년 7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 주장대로라면 그 때는 100만이 아니라 150만, 200만명에 이르는 기간제 근로자가 실직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입법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기간제법 부칙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고용구조의 왜곡현상을 부채질하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착오 : 노동시장 구조와 비정규직 고용실태 도외시

아래 [그림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정규직 비율은 정체 상태인 반면, 비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전년대비 정규, 비정규 증감추이(2001~2007)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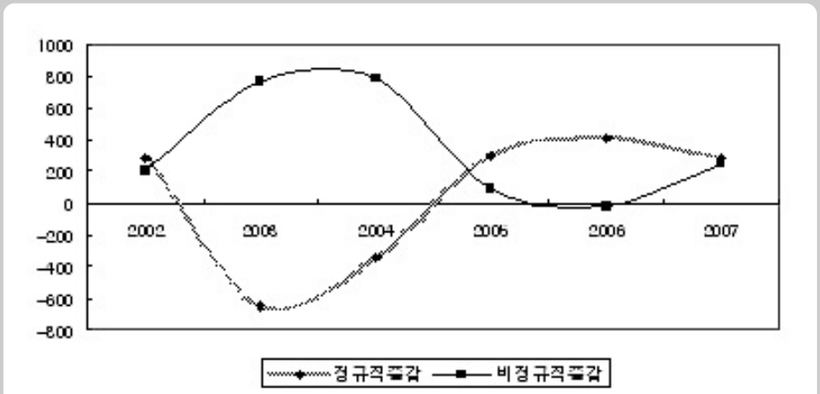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 년도

굳이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에서 ‘ 좋은 일자리(정규직) ’는 점점 줄어들고, ‘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의 묵인 하에 노동시장을 휩쓸고 있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실태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고용구조의 왜곡현상을 부채질하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증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저하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수출의존도를 높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40%에서 49%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내수시장이 위축된 결과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림 2]에서 보듯이 1997년 이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증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저하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수출의존도를 높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2]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의 소비, 투자, 수출의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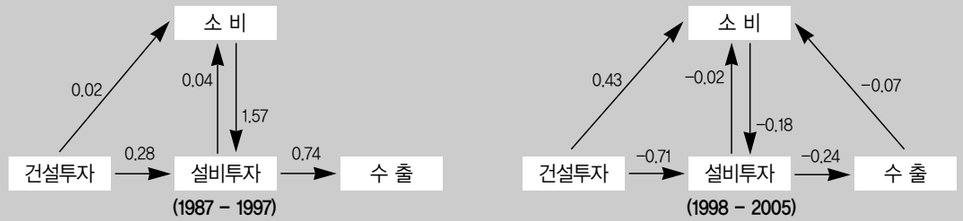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6)

이처럼 수출과 내수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증가된 결과 실질 구매력이 있는 유효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임금과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갑을 열리 만무하고, 이는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을 초래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내수의 불균등성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더욱 허약해질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사라진 기간제 근로자들과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근로자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3]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조 추이(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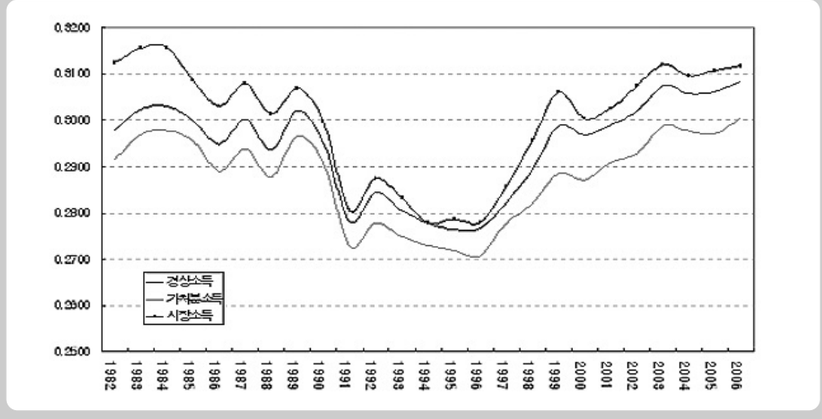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 및 전국가계조사자료, 각 년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사용자의 근로자 선택의 폭만 넓혀줄 뿐이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경제적 · 법적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한편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 분배구조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법안이고, 과연 정부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3.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 노사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와도 아무런 협의 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법조계, 노동계로부터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합리적 토론과 분석을 생략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개정안이 고용시장에 끼칠 해악과 파장은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색이 OECD에 가입하고, 노사선진화를 추구한다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과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지 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직결되고, 사회적 양극화와 우리 경제구조의 체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하지만, 정부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Ⅲ. 기간제법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점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의 문제점

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주된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노동시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상 근거 있는 판단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사용기간 연장이 일자리 유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 · 통계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막연한 주장과 선전만 난무할 뿐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근속이 길어지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더 떨어지며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는 학계에서 대체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사용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4년 간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기간 연장과 상관 없이 사용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고, 갱신하더라도 지극히 짧은 기간만 고용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 상승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뚜렷한 유인도 없습니다. 요컨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사용자의 근로자 선택의 폭만 넓혀줄 뿐이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경제적 · 법적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봉쇄될 것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는 애초 예정되어 있던 정규직 전환계획도 취소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고심했던 사용자들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임금으로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신규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공익적 가치의 부존재). 정부가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 대량해고설'은 경제적 ·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도 제시된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을 초래하고, 비정규직의 고착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반증만 존재할 뿐입니다.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4년이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만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함정 '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비정규직의 고착화 '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이번 개정안대로 4년간 안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회피할 것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 좋은 일자리(정규직) '는 점점 줄어들고, '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는 점점 늘어나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과 고착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무기계약에 의한 정규직 고용 '대신에' 기간제계약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 '을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정착시켜 고용시장에서 심각한 왜곡 현상을 낳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고용유지 '의 실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에 다름 아닙니다.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위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이번 개정안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합니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이익입니다(법적 보호이익). 지난 정부와 국회는 기간제법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의 최장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정부의 약속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2], 제5조[3]를 신뢰하여 비정규직으로 2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묵묵히 근무해왔는 바,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특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신뢰보호의 필요성).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저임금과 온갖 차별을 묵묵히 견뎌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어린 노고와 땀에 배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의 신뢰는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침해정도의 중대성).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 2년에 이어 다시 2년간 저임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공익적 가치의 부존재). 정부가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 대량해고설 '은 경제적 ·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도 제시된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을 초래하고, 비정규직의 고착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반증만 존재할 뿐입니다. 정부가 나쁜 일자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촉진하여 우리 사회를 경쟁력 있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드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강변하면 모르되, 비정규직의 고용 유지나 정규직 전환의 기대가능성 제고와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가

2)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3)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받는 침해의 정도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뢰보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본권보호 및 법치주의 원칙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 결

이처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부정적 효과는 명확하고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를 ‘ 저임금 비정규직 ’으로 고착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된 근로자는 영원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게 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도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행 기간제법이 완전무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고착화와 대량양산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우리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파국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빼앗아 기간제 근로자를 절망으로 내몰고,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과 고착화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차별시정 관련 문제점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은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차별시정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차별이 있은 날 ’이 아니라‘ 차별을 안 날 로 변경하고, 신청기간도 1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적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누적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차별을 안 날 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재직 중에는 감히 엄두를 못 내다가 퇴직 후에 비로소 차별시정을 신청할 여지도 많기 때문에 다른 구제 절차에

지금 시점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고착화와 대량양산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우리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파국만 초래할 뿐입니다.

비해 그 기간을 장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차별의 시정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차별에 대하여 그 종료일로부터 적법한 기간 내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음에도 계속되는 차별 전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단지 신청기간 이내의 차별에 국한하여 시정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동위원회가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운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잘못된 행정 관행을 입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에게도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일상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근로자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도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신청권이 박탈된 차별시정 제도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화석화된 문자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결체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파견법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점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정부는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주된 이유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파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파견법은 2006년 개정 전에도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2년 후 직접고용 의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올 7월부터 파견기간 만료일이 일시에 도래하여 극심한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부는 불법파견을 행하였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의무의 부담을 훨씬 덜게 됩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2. 파견근로의 급속한 확대 가능성

파견기간의 연장은 결국 사용자들로 하여금 파견근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파견근로를 급속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가‘ 상용형 ’이 아닌‘ 등록형 ’과‘ 모집형 ’의 파견을 원칙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일본에서와 같은 초단기 파견까지 성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불법파견 만연의 위험성

정부는 불법파견을 행하였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의무의 부담을 훨씬 덜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파견을 감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으로서 불법파견이 만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고용의무 부담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불법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V. 입법 방향과 절차에 관한 제언

1. 입법 방향에 관한 제언

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사유 제한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가 아니라‘ 비정규직 대량양산과 고착화 현상의 심화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할 때만이 올바른 입법적 해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는 줄이고‘ 좋은 일자리(정규직) ’는 늘려 사회적 양극화의 폐단을 시정하고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정규직 비율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 구매력의 증대로 내수시장이 활력을 찾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 차별해소 및 시정 절차의 실질화

현행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제도를 실질화하려면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석화된 문자로 전락한 차별시정 제도를 실질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자료 제출 절차를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차별신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불법파견 금지방안의 입법화

현재 노동시장에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불법파견을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공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파견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제에 현실과 맞게 파견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폐해를 시정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파견 조사전담팀의 구성 및 활동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의 제도화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 방향 못지않게 입법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가 대립되는 노사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컨대, [표 1]과 같이 10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감면의 경우 그 소용비용은 2년간 2조 정도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정규직 전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표 1]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와 연간 소요 예산액

	t + 1년	t + 2년	비 고
대상규모	334.7천명	102.0천명	
임금 지원	10,167억원	3,098억원	정규직과 임금격차 50%
사회보험료 감면	14,073억원	4,288억원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2009)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 감소를 도모하는 입법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 입법 절차에 관한 제언

비정규직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 방향 못지않게 입법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가 대립되는 노사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쪽 당사자인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개정안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없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의 방식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만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현실을 도외시한 채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초래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사회 각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 쪽 당사자인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개정안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없습니다.

VI. 결 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함정 ’을 더욱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된 근로자는 영원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게 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는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실질 구매력의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사실관계를 전도하여 현실과 정반대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년 내내 추위를 참으며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년 더 밖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말입니다. 2년이 지나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추위에 떨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여 잘못된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다보니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없고, 절차가 잘못되다보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영철 사태와 제5차 사법파동

글 _**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은 그 나라 사법에서 최종심을 다루는 사법최고위직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총칼로 지탱될 수도 있다면, 사법부는 오직 도덕적 권위로 유지된다. 정의(正義)를 상징하는 그 도덕적 권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법관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부를 때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 "라는 호칭을 쓴다. ' 정의의 화신 '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장 시절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은 언론을 피해 두 달 넘게 후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대법원에서 맡게 된 촛불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도덕적 권위를 잃었고 더 이상' 정의의 화신 '도 아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의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후배 판사들로부터도 존경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석연찮은 결정 이후 각 법원마다 판사회의가 앞다투어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번져간 것이 그 예이다. 전국의 지방법원 중 반 이상의 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석판사들까지 신대법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열었다. 참여한 법원이나 판사 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이번 사태를' 제5차 사법파동 '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 판사회의에서 법관들은 한결같이 신대법관의 행위가 위법한 재판권 침해라고 결론짓고, 표현을 에둘러 했지만 사실상 신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 대법관은 전국의 많은 판사들로부터' 사실상 '탄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신 대법관 사태의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 모색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견제를 받지 않은 사법행정권이 오랫동안 개별법관들을 부하처럼 통제해 온' 사법부의 관료화 '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법부의 관료화 '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고 그것이 구체적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것이 신 대법관 사태라 믿는다. 법원장이 그토록 집요하게 소속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토록 일관되게 특정사건들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라고 사실상 종용할 수 있었던 것은 관료화된 사법부의 분위기 속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신 대법관이 들끓는 국민들과 법관들의 자진 사퇴 요구 속에서도 저렇게 완강히 버틸 수 있는 것도 사법부의 관료화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관료화된 사법부 속에서 동료 고위법관들이, 또 법관이 4명이나 포함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경고나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일이지 대법관직을 물러날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법원수뇌부가 그토록 많은 수의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을 철없는 일부 부하들의 집단항명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법관의 독립에 대해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법관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역사적 중대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관회의는 애초부터 1993년의 제3차 사법파동 직후 법원의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박정희 정권으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의해 촉발된 1971년의 제1차 사법파동, 군사정권하에서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던 사법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개혁 요구로 시작된 1988년의 제2차, 1993년의 제3차 사법파동,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관행과 불합리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일어난 2003년의 제4차 사법파동 모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법원을 다시 국민 가까이로 끌고 가려는 소장판사들의 사법부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제4차 파동 이후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나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면 오늘 날의 신대법관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현재의 제5차 사법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5차 사법파동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신대법관이 사법부를 위해 용단을 내리고, 대법원이 제4차 사법파동에서 제기된 법관들과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 요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해결의 의지와 실천으로 답하는 길만이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도(正道)라 믿는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선고 2009고단 304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 아고라 '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 미네르바 ' 라는 필명으로 제시하였던 사람인 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에 관하여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큰 명성을 얻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37~38만 명이 조회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인을 전직 고위경제관료, 은행장, 기업 경영자, 증권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등으로 추측하면서 ' 경제대통령 ' 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① 정부는 재정차관을 상환하거나 무기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외국환(미국 달러, 이하 ' 달러 ' 라고만 함)을 해당 부처별로 시중은행에서 환전하여 조달해 오던 중 환전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환전은행 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2008. 2. 1.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정부 부처의 달러 수요를 충당하는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위 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하고 종전 방식으로 환원하였을 뿐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말경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475억 달러로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화예산 환전 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2008. 7.30.경 인터넷에서 " 8.1.부터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 " 이라는 뉴스 제목을 발견하자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 라는 제목 아래 "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외환 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데...이제서야...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구나...지금 외국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 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② 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대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 2008. 12. 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경제 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의 차원에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

서 자신이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경제정보를 작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게시한 것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모, 손○두, 이○규, 김○천, 박○엽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2008. 7.말 당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인터넷 뉴스 속보 제목에 '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2008. 8. 1.부터 중단된다 '는 내용이 게시되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2008. 10.경에서야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2008. 12. 29.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12. 29.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있다가 바로 사과한 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사실에다가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이 사건 인터넷 경제 토론장의 성격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 허위의 사실 '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 허위의 사실 '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 공익을 해할 목적 '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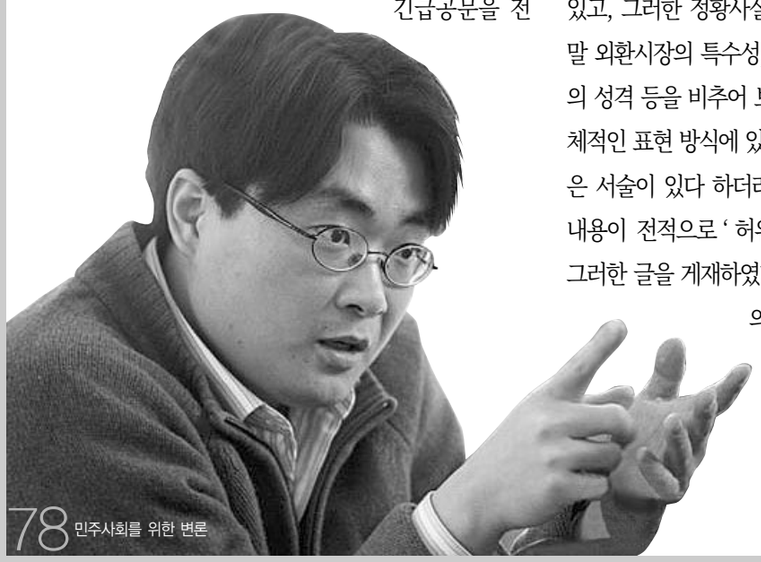

피고인에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더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신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당해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통신행위의 내용과 태양, 통신행위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08. 7.경에는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2008. 12. 말경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이 사건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글 제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피고인의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일부 영향을 미친 점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2008. 10.경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모, 손○두, 이○규, 김○천, 박○병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

용산참사 기피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사건

2009고합153, 168, 247(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신청인

(피고인)김주拟 외 8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법관기피를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한拟석, 이拟혁, 정拟경을, 같은 법원 2009고합153, 168, 247(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경위

용산4구역(정식명칭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은 2006. 4.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용산구청은 2006. 10. 12. 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를, 2007. 5. 31. 사업시행인가를, 2008. 5. 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용산4구역은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용산역도 가까우며, 국제빌딩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 등의 영업이 활발하여 상권이 발달하였고, 따라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 특히 상가세입자들은 개발이익에 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거액의 권리금 내지 가게 시설비 등에 관해서는 한 푼도 보상받지를 못한 채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만을 받고 땀 흘려 가꿔온 자신들의 가게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합 및 시공사측은 철거업체인 호람건설 주식회사와 현암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입주민들을 이주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들 철거업체 용역직원들

은 입주민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입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입주민들은 용역들의 폭력을 참다못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못 본 척 하면서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2009. 3. 경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인,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합니다)들 중 일부는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의 회원이고 또 다른 일부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다른 지역 회원들입니다.

피고인 이충拟, 김재拟, 김대拟 등 용산4구역상공철대위 소속 회원들은 피고인 김주환 등 전철연 회원 등과 같이 2009. 1. 19. 새벽 용산4구역 내의 남일당 건물에 들어가 망루를 짓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망루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철거업체의 용역직원들이 피고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후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물대포 등을 앞세우고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 및 검거 작전을 펴나갔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심지어 용역들과 공동작전을 펴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농성 시작 하루만인 2009. 1. 20. 새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찰특공대 중 일부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컨테이너 박스에 올라 탄 채로 공중에서 망루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을 폈고, 다른 일부는 건물 아래에서부터 망루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및 진압작전을 펴나갔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무리하게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농성자 중 5인과 경찰특공대원 1인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위 참사가 있은 후 검찰은 위와 같은 참사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 등 농성자들에게 물으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죄책으로 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피고인들과 검사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1)공소장에 의하면 망루의 화재가 농성자들이 불붙인 화염병을 던져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여부와 2) 공소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상죄로 의율하였는데,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1) 그러나 검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농성자 5인의 희생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망루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철거업체의 용역직원들이
피고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후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물대포 등을
앞세우고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 및 검거 작전을 펴나갔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심지어 용역들과 공동작전을 펴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무리하게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농성자 중 5인과
경찰특공대원 1인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위 참사가 있은 후 검찰은 위와 같은
참사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 등 농성자들에게 물으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죄책으로 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2. 법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및 검사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불이행

가. 법원의 수사기록열람 · 등사허용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9. 3. 25.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법률상 ·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 등사를 담당 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09. 3. 26.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열람 · 등사를 신청한 서류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람 · 등사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이어 2009. 3. 27. 열람 · 등사거부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9. 3. 31. 귀원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 · 등사를 거부한 위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 · 등사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2009. 4. 14. 귀원으로부터 위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검사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불이행 (검사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거부처분)

변호인은 2009. 4. 14. 법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에 기초하여 다시 검찰에 열람 · 등사가 거부되었던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9. 4. 17. 당초의 열람 · 등사 거부사유를 다시 내세우면서 대부분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 등사를 거부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3항을 거부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열람 · 등사신청과 이에 대한 검찰의 거부는 귀원의 2009. 4. 14.자 열람 · 등사허용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 의미는 변호인이 검찰에 대해 귀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이행을 촉구하자 검사가 열람 · 등사허용결정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법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후 검찰의 수사기록 일부 교부

(1) 1차 교부

한편, 검찰은 2009. 4. 14. 귀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이후 증거기록 제10권 10책을 변호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 증거기록은 검사가 2009. 4. 10. 귀원에 추가로 증거신청한 것인데{다만, 검사의 2009. 4. 10.자 증거신청서에 첨부된 증거목록은 ' 증거목록(09. 4. 9.자 추가증거) 라고 되어 있음}, 위 증거들은 당초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수사서류 중 일부로서,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검찰은 2009. 4. 13. 변호인에게 위 서류들에 대해 열람 · 등사를 허용할 것임을 알려왔고, 변호인은 2009. 4. 14. 귀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이후 검사로부터 위 증거기록을 교부받은 것입니다(이하 변호인이 2009. 4. 14. 교부받은 위 수사서류를 ' 열람 · 등사허용결정 후 1차 교부본 ' 이라고 합니다).

(2) 2차 교부

변호인이 2009. 4. 22. 제1회 공판기일에" 검찰이 열람 · 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류 중 검찰이 2009. 4. 17.자로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자{구체적으로 ①김拟중(채증요원, 수사기록 4861쪽 진술조서), ②민拟우(채증요원, 수사기록 7418쪽 진술조서), ③하拟남(용역, 수사기록 8036쪽 진술조서 및 8052쪽 진술서), ④김拟림(용역간부, 수사기록 6071쪽 2회 진술조서), ⑤이拟영(용역, 수사기록 7575쪽 진술조서 및 10046쪽 진술서), ⑥김拟표(외부전문가, 수사기록 10120쪽 진술조서), ⑦노拟환(특공대원, 5396쪽 진술서), ⑧강拟경(특공대원, 6117쪽 진술조서), ⑨박拟우(채증 담당 특공대원, 5492쪽 진술조서), ⑩박拟현(특공대원, 6167쪽 진술서), ⑪김拟환(특공대원, 6239쪽 진술서)}", 검찰은 신청한 증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모두 변호인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귀원의 재차 확인 요청에 확인 후 누락되었다면 교부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2009. 4. 22. 제1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증인(주拟현, 김拟준, 김拟식, 박拟수, 김拟창, 이拟익, 유拟덕, 김拟선) 신청을 하였는데, 변호인이 검찰이 ' 정보상황보고 ' 작성자로 주장하는 ' 유拟덕 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역시 검찰이 열람 · 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면 유拟덕에 대한 진술조서를 교부하겠다 "고 밝혔으며, 귀원은 검찰에 대하여" 그와 같은 선별적인 수사기록 교부는 허용할 수 없으며, 다음 기일까지 열람 · 등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것 "을 명하였습니다.

검찰은 2009. 4. 22. 제1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증인(주○현, 김○준, 김○식, 박○수, 김○창, 이○익, 유○덕, 김○선) 신청을 하였는데, 변호인이 검찰이 '정보상황보고' 작성자로 주장하는 '유○덕'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역시 검찰이 열람 · 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제1회 공판기일 다음날인 2009. 4. 23. 검찰 측 증인신문 불가능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한도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채증요원, 철거용역업체 직원,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이 기재된 일부 진술조서 등에 관하여만 추가로 변호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수사서류에 대하여는 여전히 귀원의 열람 · 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하 변호인이 2009. 4. 23. 교부받은 수사서류를 ' 열람 · 등사허용결정 후 2차 교부본 '이라고 합니다).

라. 이상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 3. 25. 변호인, 검찰(검사 조○경)에 수사기록 열람 · 등사신청.

2009. 3. 26. 검찰(검사 안○돈),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열람 · 등사신청에 대해 거부방침 밝힘.

2009. 3. 27. 검찰(검사 조○경), 열람 · 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전부 불허) 발송.

2009. 3. 31. 변호인, 귀원에 수사기록 열람 · 등사허용 신청.

2009. 4. 10. 검찰(검사 안○돈), 귀원에 수사기록 열람 · 등사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09. 4. 14. 귀원, 수사기록 열람 · 등사허용결정.

2009. 4. 14. 변호인, 귀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에 따라 검찰에 기록 열람 · 등사 재신청.

2009. 4. 14. 검사, 증거기록 제10권 10책을 변호인에게 교부.

2009. 4. 16. 검찰(조○경 검사), 열람 · 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2009. 4. 14. 교부한 서류 외 전부 거부) 발송.

2009. 4. 17. 변호인,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귀원에 대하여 검찰이 열람 · 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에 대하여 '압수 · 수색 신청서' 제출.

2009. 4. 22. 귀원은 제1회 공판기일 오후 공판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압수 · 수색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압수수색을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압수 · 수색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겠다. 다만 검찰이 교부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지함.

변호인, 법정에서 압수 · 수색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미결정 고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

2009. 4. 23. 검찰(조○경 검사), 검찰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김우중 등의 진술조서 등의 수사서류 일부를 추가로 변호인에게 교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서류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상 교부할 수 없다는 의사 재확인.

2009. 4. 30.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요지 :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그에 따라 변호인이 열람 · 등사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들의 방어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적정한 시점까지 공판기일을 중지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

2009. 5. 01. 변호인, 불출석

법원, 변호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 연기

2009. 5. 04.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2009. 5. 06. 변호인, 법정에서 수사기록 열람 · 등사의 필요성 및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 · 등사를 허용하도록 적정한 소송지휘권 발동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소송지휘권 발동이나 공판기일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함.

2009. 5. 12. 피고인들,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허용결정 불이행으로써,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고(증거은닉), 검사의 객관의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검사 고소함.

또한 피고인들은 검사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2009. 5. 13. 변호인,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제출.

3.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및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009. 4. 14. 결정으로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 ·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의 경과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이 사건을 공평하게 재판할 것을 기대하거나 피고인 및 일반인에게 이 사건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부는,

2009. 4. 14. 결정으로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 ·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의 경과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이 사건을 공평하게 재판할 것을 기대하거나 피고인 및 일반인에게 이 사건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나. 형사소송법상 전면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4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 · 등사 또는 교부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이에 대응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측 증거를 열람 ·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 등사 또는 교부를 허용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소송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사건 재판부는 스스로 밝힌 대로 검사가 재판부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다면, 형사소송법이 법원에 허용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직권 발동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5항의 의미와 한계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5항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 또는 교부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검사는 제2항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검찰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할 것 "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5항은 이 사건과 같이 ' 검사가 법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이행 자체를 거부할 경우 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며, 위 규정의 증거신청 금지는 이 사건에서 검사에게 실질적인 ' 제재 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5항은 법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 지체 없이 ' 열람 · 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적기에 해당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즉, 모든 열람 · 등사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대한 제재로 해석하여야 하고), 검사가 해당 증거를 신청하지 않기만 하면 열람 · 등사허용결정 불이행의 모든 형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열람 · 등사허용결정의 취지와 달리 수사기록의 사건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명시적으로 열람 · 등사허용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또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기록 중 변호인이 열람 · 등사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서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검사의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사가 법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향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런' 제재 모서의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의도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의도하는 바는 열람 ·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수사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피고인 측에도 개시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5항이 결코 법원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의 이행 확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부는 스스로 밝힌 대로 검사가 재판부의 열람 · 등사허용결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어떠한 ' 불이익 '을 가하고자 한다면, 형사소송법이 법원에 허용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직권 발동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 법원의 적정한 소송지휘권 불행사 또는 행사 포기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열람 · 등사허용결정(증거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압수 · 수색신청, 수차에 걸쳐 검사가 이 사건 열람 · 등사허용결정을 온전하게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는 의미의 공판기일변경신청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내용에는 증거개시를 강제하는 권한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압수 · 수색은 위와 같은 검사의 증거개시결정 불이행시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권한(소송지휘권 포함) 행사 및 그에 따른 조치들은 비록 형사소송법에 열람 · 등사결정 불이행에 대한 효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권한(소송지휘권 포함)의 본질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변호인이 ' 신청 '의 형태로 적정한 소송지휘권 발동을 촉구한 수사기록 압수 · 수색, 열람 · 등사허용결정시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고 공판기일 변경하는 방법 외에도 법원은 검사에 대한 열람 · 등사허용결정의 이행 촉구, 이행 촉구의 의미로서 재차 열람 · 등사허용명령을 하는 등 형사소송법이 법원에 부여한 공판절차상의 권한을 다양하고도 효과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 및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보장하고 수사기록의 접근을 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명시적으로 열람 · 등사허용결정 이행을 거부할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검사에게 위 결정의 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형사소송법상 불이익(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5항을 의미)만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소송지휘권 발동이나 공판기일변경을 하지 않겠다(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는 고지만을 반복함으로써 적정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피신청은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를 해소하고 공평한 법원 구성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객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의 발생 및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불행사 또는 소송지휘권 행사의 포기는 이 사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관한 적법한 재량 판단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 수사기록 접근을 통해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재판부는 더 이상 공판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열람 · 등사허용결정 후 검찰이 1차 · 2차로 교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1차 · 2차 교부본은 법원이 열람 · 등사허용을 명한 기록 중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또는 검찰이 최초 열람 · 등사를 허용한 수사기록과는 모순된 내용 및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자세한 내용은 소갑 제1호증 2009. 4. 30.자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제13쪽 내지 제41쪽 참조),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열람 · 등사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 수사기록에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 중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미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통상인의 판단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하리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피신청은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를 해소하고 공평한 법원 구성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객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 서보열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설창일
변호사 강영구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택근
담당변호사 황희석

용산참사 어느 유가족의 탄원서

– 어머니와 저에게 남편을 돌려주세요.

(용산 참사 유가족 / 정영신 / 2009-05-21)
용산참사 구속자 이충연 용산4가 위원장 부인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한양석 재판장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용산참사로 아버님을 잃고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인 이충연 씨의 처인 정영신이라고 합니다. 제 글을 죄인의 아내가 쓴 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서툰 글이지만 정성껏 보냅니다.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6년을 연애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가장 이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 무엇보다도 성실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단 하루를 쉬지를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남편의 성실함을 느꼈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에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주위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면서도 자기 생일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 노점상을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강변역 근처에서 액세서리를, 남편은 용산 근처에서 테이프장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변역에 가서 저의 노점자리를 펴주고는 다시 용산으로 가서 자신의 노점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끝날 때도 남편이 먼저 자리를 접고 다시 강변으로 와서 저의 노점자리를 펴고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우린 행복했습니다. 다 큰 처녀가 노점에서 장사를 한다니까 주위에서 놀라기도 했지만 제 옆엔 남편이 있었기에, 이렇게 몇 년 만 고생하면 우리도 번듯한 가게라고 차려놓고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며 노점 옆 구석에서 먹으면서도 우리의 꿈이 있기에, 이렇게 몇 년 만하면 결혼도 하고 가게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힘들 때면 서로에게 용기주면서 어깨 도닥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노점이라고 깔보기도 했지만 우리 둘은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 가게를 함께 해보자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결혼도 안한 제가 시어른들과 함께 장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엄마 가게가 예전처럼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 벼

말로만 들었던 용역,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도 없고 오로지 무지막지한 폭력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역들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 뺨을 때리기도 하고 한번은 아버님이 동네 현수막을 달려고 사다리에
오르자마자 그놈들이 와서는 욕을 하며 사다리 다리를 흔들며 내려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고 말을 하여 그래서 가게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워낙 낡은 건물이라 손만 닿아도 와르르 무너지고 이쪽을 건드리니까 저쪽이 망가지고… 생각보다 가게수리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아껴야 한다며 아버님께서 데모도 일을 하시고 남편은 자재를 사오고 어머니는 인부들 밥을 해먹이시고 저는 페인트칠과 잡일을 하면서 40일에 거쳐 공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사서 공사를 했더라면 공사기간이 조금 걸렸겠지만 기술자 한명과 저희 가족 4명이 하다 보니 공사가 더뎌졌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변하는 가게를 보며 저희 가족에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와, 가게가 정말 이쁘다. 무슨 가게일까? 문 열면 꼭 와야지.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힘든 줄도 모르게 일을 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가게 오픈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시는걸 보니 저의 부부는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비록 많은 빚을 지긴 했지만 이대로라면 얼마 안 있어서 빚도 다 갚고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일어나시면 새벽기도 가시지 전 가게에 들르셔서 어제 못한 마무리를 해주시고 어머니는 장을 봐주시고 남편은 어머니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는 홀을 보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 미뤘던 결혼도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말로만 듣던 재개발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오픈한 지 7개월 만에 사업승인이 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용역이라는 인간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무렵 우리 가족에게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용역,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도 없고 오로지 무지막지한 폭력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역들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 뺨을 때리기도 하고 한번은 아버님이 동네 현수막을 달려고 사다리에 오르자마자 그놈들이 와서는 욕을 하며 사다리 다리를 흔들며 내려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며 막는 동네 어른들을 내동댕이치고 저에겐 욕을 하며 꺼지라고 하면서

집을 가려고 해도 길을 막고 이 거지 같은 년 돌아다니라고 욕을 해서 112에
신고를 해보지만 경찰은 오히려 저에게 돌아다니라며 저 사람들 건들지 말라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일쑤고 저희에겐 어떠한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다리 위에 있는 아버님의 성기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마구 때리는 거였습니다. 너무도 놀라고 무서웠지만 아버님과 도망 오는 길밖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다친 곳을 약을 발라 드리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법이 이런 건지,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거리로 내쫓겨나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을 가려고 해도 길을 막고 이 거지 같은 년 돌아다니라고 욕을 해서 112에 신고를 해보지만 경찰은 오히려 저에게 돌아다니라며 저 사람들 건들지 말라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일쑤고 저희에겐 어떠한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흰 무서워서 도망 다니게 됐고, 혹시 길모퉁이에 용역들이 서 있을 때면 한참 피해 있다 용역들이 없어진 후에 길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1주일 동안 가게에 행패부리는 사람이 와서 가게를 못나간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사 간 공가엔 용역들이 상주를 하면서 협박을 하기 일쑤였고, 벽엔 말도 못하는 혐오스런 낙서를 휘갈겨 놓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물들을 버리고, 죽은 짐승들을 가져다 놓고, 손님 들어올 시간에 돌아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갖은 욕설과 협박뿐이고… 정말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흰 저희 나름대로 규찰이라는 걸 돌면서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전부 저녁에 장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님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또 어른이시다 보니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연세 드신 아버님이 매번 용역들에게 욕설과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당하게 할 수만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맞아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차라리 내가 당해야지 어떻게 내 아들이 맞는 걸 보냐며 두 분이서 서로 책임지시겠다고 서로를 아끼셨습니다. 그런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도 무섭고 겁이 나서 이사를 가려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평가금액 가지고는 근처 어디에도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한 평생 사신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시골 가서 농사지으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한동네에서 아들, 딸들 시집 장가보내고 손주 학교도 이곳에서 보내시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서 사시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10년, 15년, 20년 한곳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딸 키우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사신 분들이십니다. 하루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단 자식들 입에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노력하며 사신 분들이셨습니다.

“말도 안 돼. 죽긴 왜 죽어, 왜 죽냐고. 떨어지기만 했어도 다 살았는데. 아니야.
다시 한 번 찾아봐라,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라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단 죄책감에 다리 인대가 파열된 것도 모른 채 일주일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단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혼자만 살았다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해 저의 남편은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불편한 건 없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무엇을 하겠냐며 이분들이 살 곳은 여기라며 울부짖으며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도 농성자도 아닌 힘없는 철거민의 아들이었고 철거민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지는 못할지언정 이 같은 아픔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야만 했던 가난한 철거민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 다닐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서 제 남편은 아버님과 손을 잡고 망루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건설회사가 우리의 편에 한번만 손을 내밀어주었더라면 제 남편과 아버님은 망루에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철거민들이 용역들에게 시달리고 매를 맞을 때 한번만 손을 내밀어주었더라면 그들은 옥상망루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난한 철거민들이 살고 싶어서 옥상망루에 올랐습니다. 결코 그들이 죽으려고 옥상망루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더 이상 길거리로 내쫓겨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한마디 외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호소를 하기도 전에 우리 앞엔 무자비한 경찰이 막아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한명과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망루에서 떨어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폐협의증으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남들은 죽을 줄 알았던 제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하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밖에는….

이틀 후 일반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울부짖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죽긴 왜 죽어, 왜 죽냐고. 떨어지기만 했어도 다 살았는데. 아니야. 다시 한 번 찾아봐라,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라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단 죄책감에 다리 인대가 파열된 것도 모른 채 일주일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단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혼자만 살았다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용산참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충연 용산 4가 철거대책위원장의 부인 정영신 씨가 남편에 대한 변호인단의 보석신청에 맞추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부에 보낸 편지 형식의 탄원서입니다.

체포 당일, 정형외과의사선생님이 무릎이 이상하다며 MRI를 찍어보자고 하여 영상학부 가서 사진을 찍고 나온 후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과도 보지 못한 채 경찰서로 끌려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아버지 영전에 문상 한 번만 드리고 가게 해달라며 애원했지만 검사가 끌고 오라고 했다며 제 손을 뿌리치며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저의 남편은 목발을 디디며 걸어야하고 폐협의증 약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 몇날 며칠을 통곡하는 남편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정 앞에서 소리 한번 지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목 놓아 눈물이라도 한번 흘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옆을 지켜주던 동지였던 아버지를 너무도 쉽게 보내준다면 제 남편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될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남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이려 불을 지피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용역들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 남편에게도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버지 영정 한번 뵙고 어머니 품에 안겨 아버지 잃은 슬픔을 달랠 기회를 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시어머니를 뵈면 가슴이 아려 옵니다. 넉 달, 120일 동안 시어머니를 지탱해준 건 저희 남편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하루하루 상복을 입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나오겠지 하는 바람으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제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피하거나 변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남편도 상주이기에 아버님 가시는 길만이라도 지키게 해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막내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아버님, 결국 사랑하는 아들만 살리시고는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가는 길 또한 막내아들과 함께 보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가슴속에 큰 한을 품어 주고 싶지 않은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다음 주면 결혼 일주년이 됩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어보기도 전에 재개발이란 거대한 괴물과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생일 한번 챙겨주지 못한 걸 미안해했습니다. 어버이날 장인 장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했다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작고 여린 제 남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제 남편을 풀어주세요. 어머니와 저에게 남편을 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20일
이충연의 처 정영신 올림

한국사회 분열과 소통

이대근, 4월 민변월례회

정리 _**김영준** 회원

김영준 연사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 국제 에디터를 모시고 정치와 언론과 지식인 상생과 불화의 사이라는 테마로 민변 4월 월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근 에디터님께서는 경향신문에서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을 비롯해서 일년의 씨리즈를 기획하셨지요. 기획과 글을 잘 보고 있었는데,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웃음) 민변월례회는 2009년에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사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본 정치와 언론의 모습과 정치와 언론이 왜 소통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대근 예 반갑습니다. 이대근입니다. 안내에 논설의원으로 재직함으로 되어있는데 한 3년전거고요, 지금은 편집국 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설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셔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변호사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좀 포괄적일 수 있는데요. 한국사회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고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들이 누구일까를 보면, 정치, 언론, 정치와 언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사회를 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서로 잘못 위치를 걷고 있고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면 한국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대근

1. 정치

한국사회는 상식이겠지만 분열증 저상장증을 앓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는 격변이 너무 많아서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했습니다. 경제성장도 그렇고 민주화운동도 그렇고 짧은 시기에 모든걸 다 이루었지요. 한국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획일주의 가치가 높고 집단주의 문화도 강하고 평등의식도 강하고 문화적인 동질성도 높고 단일민족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열되고 소통이 안되는 분열과 대립상태에 있는가 한다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동질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었는가를 볼 때 소말리아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말리아도 인구가 2천만정도 된다고 하는데 단일 민족에 단일 언어, 단일 종교를 써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년대에 독립하고 나서 한번도 통일된 국가로서 제 모습을 갖춰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파벌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파들이 - 그것도 중앙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무장된 파벌들이겠지요 - 지금 해안에서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붕괴되서 여러 파벌들이 자기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분열은 그 배경에 어떤 통합적인 문화와 전통이 있느냐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가 분열되면 사회가 산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소말리아가 그런 많은 통합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파벌로 쪼개져서 90년동안 한번도 파벌간의 경쟁이 종식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통합과 소통에 있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사회 분열과 소통의 원인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한국사회가 분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정치가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는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우선 정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 일례로 재벌 기업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CEO였다는 것, 여의도정치에 대한 불신, 기업인으로서 정치의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의 부족, 그것이 성장주의나 지금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보수세력을 의식하여 보수결집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일 년 전만해도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진보다 나도 한때 운동을 했다 이랬습니다. 주변에 운동권출신들도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때 구호가 실용주의였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가 똑같고 실패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포장하고
재구성하느냐는 것이지 진보냐 보수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 보수 이탈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기를 찾아가는게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도구로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걸로 많은 지지를 받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가짜진보이고 원래 보수인데 진보흉내 내다가 본색을 드러내고 선거끝나고 대통령이 되서 집권을 하니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수라도 근본주의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보수는 아니죠. 실용적 보수라고 할까요. 이회창, 박근혜 씨 같은 분들은 자신이 진짜 보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가짜보수라고, 얼치기 가짜라고 보고 있죠.

진보고 보수라서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했기 때문에 보수로 돌아섰고 보수에 지지를 받아서 그나마 국정에 기반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겁니다. 보수라서 실패한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보수화를 하는겁니다. 보수적 기반이라도 장악하기 위해서지요.

촛불집회 때가 하나의 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던 것에 대한 저항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본인이 소통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소통이 주요 담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국정에 반영하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죠. 우선 자기가 감당 못하겠다, 이건 나하고 전혀 다른 세력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속으로 선거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세력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촛불집회를 계기로 자신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지지를 모아서 가야겠고 그러다보니 보수인척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겁니다. 이런 방향이 이념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법안 추진과 정책추진에 있어서 갈등의제를 집중적으로 던지면서 사회를 두 개로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결집된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와 개혁을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그것을 만회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진보개혁의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 국정운영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지지가 상실되고 지지기반이 붕괴된 뒤에 그 다음에 진보수사 동원을 해서 자기 실패를 자기 무능에 따른 실패를 진보라는 외로운 가치를 추구하다가 공격을 당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가 똑같고 실패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포장하고 재구성하느냐는 것이지 진보냐 보수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 보수 이탈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도구로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만 나오면 전부 진저리를 치고 싫어하는 겁니다. 노무현 진보개혁도 싫고 이명박의 보수도 싫고 다 싫다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노무현의 실패의 반복을 보면 보수라서 실패한 것도 진보라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보수는 보수 나름의 방식이 있고 진보는 진보적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운영능력 국가운영의 책임성 국가운영의 기술 국가운영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국정의 방향이 진보적으로 가냐 보수적으로 가냐는 한국적 민주주의 현실에서는 사치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때문에 한국사회가 이러는 것 그 이전에 국가운영에 커다란 결함이 있는 심각한 문제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라면 왜 노무현은 실패했고 김대중은 왜 실패했고 김영삼은 왜 그렇게 망했느냐 민주화의 역대 대통령들이 똑부러지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정치학자가 제시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있는 상태에서의 있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권력도 과도하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삼권분립 실질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무소불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입니다. 전봇대 뽑는 것도 할 수 있고 일선 경찰서 찾아가서 서장한테 지시도 하고 방송도 장악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회장도 마음대로 선정하고 못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권력을 스스로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력구조가 실패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사회적 비판을 통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라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시민도 있고 진보적 가치도 있는데 진보적 정당은 없는 겁니다.
이 많은 다수의 시민들과 가치를 정치적으로 대표해 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구조를 보면 정당구조 역시 시민과의 소통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독점체제라고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기 성향분류를 진보 보수 중도라고 해서 대체로 3등분 1/3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대표가 된다면 의석 진보세력이 의석 100석.. 90석 100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석 입니까. 5석. 민주당 중 일부 정치인을 진보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도 다 합쳐보았자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시민도 있고 진보적 가치도 있는데 진보적 정당은 없는 겁니다. 이 많은 다수의 시민들과 가치를 정치적으로 대표해 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수가 과잉대표하고 있고 과잉대표하고 있는 그 거대한 구조가 시민사회를 억누르는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수의 시민들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대표로 생각할 정치적 세력도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진보하려고 해도 위에서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일상적으로 주요 담론과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거죠. 민변도 그렇고 여러 민간 시민단체들도 많이 그런 것을 하지만 그 영향력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정당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정당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매일 아침 라디오 프로같은 데에 나와서 그날그날 이슈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국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결정하고 정당의 정책을 국가의 의제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정당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시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흘러서 정치통로로 흘러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개인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민변 출신 임종인 의원 이분은 가령 진보적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난번에 낙선했는데, 그분이 들어갈 공간이 이미 없습니다. 민노당은 안 맞을 수 있고요, 진보신당은 거기 가서 어려운 길이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진보정당에 가서 개인이 희생하라고 하는거는 너무 힘든 일지요. 정치의 길을 고난의 길로 만들면 누가 정치로 갈 것이며 정치가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임종인 의원 같은 경우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선택한다면 민주당 보수정당의 모자를 쓰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을 대표할 수 있게 정치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왜곡하고 재생산하게 되어있는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정당구조가 바른 방향으로 재생산 될 수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 보수야당이 나머지 세력을 대표하게 되는겁니다. 나머지 2/3정도. 그러니까 대표하는 것도 대표되는 것과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보수야당에게 진보세력이 위탁을 하게 되는거죠. 남한테 맡기게 되는것 스스로 대표하지 못하니까 다른 당에게 맡기게 되고 결국은 보수정당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형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정당의 또 다른 문제는 이번 5개 지역 재보선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당과 야당이 싸워야하는데 각자 자기끼리 싸우고 있지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명박 심판이냐 노무현 심판이냐 정동영 심판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싸우고 있는거에요 자기와 싸우고 있고 자기의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상황에 현재 이런 선거 구도가 되니까 재미가 없죠 선거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FTA 비준 반대하면서 몸싸움하면서 해머들면서 그렇게 난리치고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정당인데 부평 을에 자기 후보를 FTA 추진실무총책임자를 공천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정치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정치로부터 퇴장을 합니다. 투표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정치에 대한 기대도 안하고 정치에 대한 투자도 안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야가 소통하느냐 보수적이니까 보수끼리 서도 잘 통할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 잘 싸우는지요. 선거에서는 FTA 후보를 내보내놓고 FTA 반대한다고 국회에서는 해머들고 싸우는 이상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보수독점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민사회의 구조가 정당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러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고 타협할건 타협하고 싸울건 싸우는게 아마 분명했을 겁니다. 원칙이 있는 자는 타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타협해도 원칙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이 없는 자는 타협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내세우는 허깨비 원칙이지만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변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격렬하게 싸우는건 그 싸움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를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자기 존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기회가 제한이 되니까 그때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싸우고 의식적으로 반대하고 격렬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자기 대표의 정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1/3, 1/3, 1/3 100석씩 만약에 100석씩 제대로

갈등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드러나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드러나고 차이를 조직하고 그 차이들간에 경쟁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점에서 갈등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소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갈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대표를 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안건이 올라와도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2. 언론

정치가 이렇다하면 언론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시민 정당 국가 이런 관계도 말하자면 의사가 대표되고 국가 중심 위쪽으로 흘러가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정당은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장악하고 시민의 의사와 지지를 받아서 정책으로 반영토록 하는 매개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정당자리에 언론을 대체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정당이 통로 역할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언론도 역시 통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과 정당이 결국은 유사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언론 이전에 하나의 정당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당파성을 얘기하지요. 당파성 자체도 문제지만 당파성을 한국언론이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당파적이지도 않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당파적인 가치 보수언론은 보수주의적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고 진보언론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수언론들이 보수적 가치를 일관되게 따르지 않습니다. 당파성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다수파면 표결로 해라 그러고 소수파면 합의를 해라 이렇게 입장을 끊임없이 바꾸어 갑니다. 결국은 일관되는 것은 뭐냐. 언론이면 언론사의 이익 정치적 이익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지 당파의 가치를 일관된 노선으로 추구하고 있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한나라당도 그렇고 보수언론들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보통신 개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해서 정부 자료도 입수하고 폭로도 하고 해서 법도 많이 바뀌고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보수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주의의 개인의 사생활 기본권에 충실하거나 저건 진정한 보수정당의 길이구나 했는데 정권교체 되니까 거꾸로죠. 인터넷 통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하는 쪽으로 과거에 자기가 했던 활동을 부정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장 열심히 썼던 언론이 동아일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동아일보가 그렇게 사생활보호와 통신비밀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언론은 정당과 마찬가지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장애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분열되어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당연히 언론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체가 분열되어있고 언론의 대립 갈등구조 보수진보 언론의 갈등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의 그런 갈등이 언론에 의해서 확대 증폭이 됩니다. 증폭된 것은 다시 정당에 갈등과 분열구조로 다시 들어가고 그것이 국가 의제를 선점하는데 있어서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들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갈수도 없게 되고 어떤 정권이 잡아도 결국은 반 이상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도 최고 목표는 40%고 30% 후반대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남았지만은 50%, 60%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 있다면 구조가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40%면 충분히 다 끌고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역사의 분열상이고 분열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등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드러나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드러나고 차이를 조직하고 그 차이들간에 경쟁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점에서 갈등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소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갈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사회의 합의 공동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신문들이 다 분열되어있죠. 이 신문 보면 저렇게 나와있고 저 신문은 저렇게 나와있고 공통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신문 봐가지고는 세상을 다 보지 못하고 여러 신문을 조합해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정치를 더 왜곡시키는게 특히 신문들이 주도를 합니다. 정당에 매일 지침을 보냅니다. 다음에 싸워야될 소재와 싸워야될 방향을 제시하면 정당이 그것을 받아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그것이 언론에 다시 반영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구조를 보면 다수가 족벌언론, 재벌언론, 종교재벌입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독립언론이고요. 지금 한국 경제 규모 12위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선진국도 이런 언론 구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의 구조가 어떻게 주요 언론을 족벌 아니면 재벌 아니면 종교재벌이 갖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수일색의 여론을 만들어 내는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사히 신문>, <뉴욕타임즈>, <르몽드> 다 어떤식입니까? 최소 리버럴 가치를 갖고 있는 신문

신문의 기능이 비판과 견제라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럽게 리버럴한 성향의 신문이 경영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게 왜 안 되는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주류신문입니다. 한국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이런 여론 구조를 가지고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문의 기능이 비판과 견제라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럽게 리버럴한 성향의 신문이 경영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게 왜 안 되는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언론의 왜곡 정당으로서의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본다면 어떤 면에선 정당의 복사판 같기도 합니다. 정당이란게 뭡니까.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사회화시키고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고 공직후보를 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론도 거의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의제설정하고 언론 기능을 통해서 정치사회화 교육시키고 매일매일 언론들이 이편 저편 나눠서 뭐 하나 나오면 한쪽의 논리에 집중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말하자면 매일매일의 여론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매일 합니다. 정당들이 매일 논평을 해서 그날의 의제를 끌어가듯이 신문들도 매일 정당처럼 여론장악을 위한 투쟁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듯이 언론도 요구와 지지를 표출하고 지지 찬반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전달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정당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 같은 경우 개방이냐 쇄국이냐 준비된 개방이냐 졸속한 개방이냐 민주주의 발전이냐 민주주의 후퇴냐 경제살리기냐 서민살리기냐 대북지원이냐 퍼주기냐 이런게 정당과 언론이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와 정책적인 지지 찬반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잘잘못을 시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시민들 각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당이 정국 주도권 싸움을 하듯이 언론도 매일 정국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촛불집회가 일 년 전에 열렸다 그러면 한쪽에선 촛불집회 축제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진 훌륭한 축제의 장이었다 이러면 다른 신문들은 당해 있었던 폭력을 1면 톱에 써서 폭력의 장으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주도권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민들이 신문들을 보면 축제와 폭력 두 가지로 양분되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신문이 공직을 배출합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모두 동아일보 출신이죠. 그 전엔 또 조선일보 출신들이 공직을 장악을 했습니다. 공직배출하고 정권장악하려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하고 여론을 지배하려고 하는 점에서 정당과 언론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당파성이 필요하지만 정당은 당파를 자기의 존재 근거를 가지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전달을 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왜곡하고 누락하고 과장하고 가공함으로써 가공된 현실, 가공된 진실을 전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나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모두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언론 때문이라는게 물론 노무현이나 이명박으로서는 핑계대기는 좋지요. 언론이 안 도와줘서 그런거다
어떤 점에선 언론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일면적으로 맞는 점이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의 이런 비정상적인 기능과 정치와 언론의 잘못된 만남이 정부와 언론, 정치와 언론을 전부다 망치는 결과를 가져 오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을 한다면 정치의 실패, 정권의 실패를 막을 수 있지만 기능을 못함으로써 실패의 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나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모두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언론 때문이라는게 물론 노무현이나 이명박으로서는 핑계대기는 좋지요. 언론이 안 도와줘서 그런거다 어떤 점에선 언론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일면적으로 맞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를 장악하면 언론을 싫어합니다. 정부를 장악하기 전에는 언론 자유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정권장악한 뒤에는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비판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 대통령은 비판을 싫어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안 만나주는가 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지말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잘 해봐라라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해서 제한하도록 막는게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언론 정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은 언론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나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경향이나 한겨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언제든지 자기가 약하면 등에 칼을 꽂는 집단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자마자 하는 얘기들이 기자들하고 밥먹고 술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론과 스스로 적대관계를 만들어내고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하고 중앙하고 뒷거래를 했습니다. 홍석현 시장을 주미대사로 보냈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중앙일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반대가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을 너무 많이 싫어하다보면 자기가 망하게 되는데 대표

정부, 언론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거에 지식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쏠림 속에서 정신없이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을 잡고 왜곡된 구조를 깨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식인은 자기 계급을 배반하고 신분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한국 지식인들이 정치와 언론이 빚어내는 이 왜곡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으로 조선일보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계기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매일매일 조선일보의 신뢰도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나 이미 망했는데 내 지지 높아지는 건 상관없이 나 물귀신 작전이다 조선일보 신뢰도가 내려가는 걸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언론 적대가 노무현 정권을 망쳤다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와는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언론들이 자기 편이고 노무현이 적대했다고 하면 이명박은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보수언론들이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이었던 방송은 권력에 의해서 최소한의 중립화 좋으면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언론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죠? 언론하고 싸우면서 상대 언론이 망하는 것을 자기가 무너지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아는 정권하고 그래도 어쨌든 온갖 방법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당파적이다 좋습니다. 자기 보수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면 자기 언론도 살고 이명박 정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정권도 올바른 방향을 자기 못하는 공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언론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를 불러오고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언론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까지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 지식인

이렇게 정부, 언론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거에 지식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쏠림 속에서 정신없이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을 잡고 왜곡된 구조를 깨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식인은 자기 계급을 배반하고 신분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지식인은 중산층도 될 수 있고 상류층도 될 수 있지만 자기 신분을 뛰어넘고 자기가 처한 공간 자기가 위치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전파하고 노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국 지식인들이 정치와 언론이 빚어내는 이 왜곡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다원적인 사회 같지만 사실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여론독점, 대기업, 정당구조, 사회적 가치, 부 모든걸 보더라도 소수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사회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인의 역할은 다원성을 좀 더 확장하는 역할 그리고 지배질서를 바꾸는 노력 새로운 길 대안 해게모니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지식인의 역할에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조기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길을 갔느냐. 지난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캠프에 들어갔었죠. 그러다 노무현 캠프로 옮겨갔고 그러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향신문지원운동을 했습니다. 희망경향이란걸 본인이 조직해서 경향신문같은 대안 언론을 키워야 된다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버리고 떠나갔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니까 경향신문이 이럴 수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왜 비판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신문이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게 본래 역할인데 그걸 다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희망경향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홍보수석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올 때 대통령은 21세기에 있는데 국민은 19세기에 있다. 대통령은 선지자고 국민은 신민으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지요. 얼마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몇백만달러 수수의혹에 대해 생계형 범죄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사고없이 이런 편들기식 우리편이냐 아니냐만이 유일한 가치인걸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여전히 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도 그렇습니다. 신문 칼럼 보면은 물론 어느 신문 칼럼은 진보언론이든 보수언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보수언론인데 칼럼의 주어가 좌파가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거냐면 좌파들은 이렇다 좌파 누구누구씨가 어떠한 현안에 관해서 어떠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훌륭한 칼럼인데요. 좌파들은 이렇다 그 좌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전제로 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대충 칼럼들이 이런 것들이 대다수에요 환멸을 불러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제가 어디에 쓴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주어는 예술가입니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몰락하고 피노체트에 의해서 피살된 빅토르 하라라고 문명비평가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그 위대한 소통한 능력 때문에 게릴라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일으키는 겁니다. 어느 편이든 간에 언어생활에 이런 낙인찍기가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종 교수가 언젠가 좋은 말을 하셨죠. 정명운동을 펼치자 바른 이름 지어주기 운동을 하자 진보보수는 무슨 진보보수냐 너는 좌파 우리는 우파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자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좌파가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고 우파가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 현실에서 맞느냐 이것이 가능하려면 박효종 교수가 좌파의 시민권회복운동을 먼저 해서 좌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광장에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뒤에 제 이름을 가지자 이러면 타당한 주장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 대표도 그렇고 국정원 2차장 친북좌파척결이 선진화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는 좌파로 커밍아웃하라 이런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끌려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향신문 제작할 때 교과서 우편향 비판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교과서가 좌편향이었단 이야기냐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지, 역사인식의 왜곡인지 과장인지 축소인지를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제가 어디에 쓴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주어는 예술가입니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몰락하고 피노체트에 의해서 피살된 빅토르 하라라고 문명비평가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그 위대한 소통한 능력 때문에 게릴라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지식인이라고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이 언론과 정당에 쏠리지 않고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위험한 존재이고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왜곡된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와 언론 지식인 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언론이 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아일보같은 경우에 민주화과정에 큰 역할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보수화되어 있고 기자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가를 생각해보면, 우선 그것이 경제적으로 생존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벌 사주의 개인적인 성향과 판단에 따라 구성원들은 종속되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자유언론운동, 기자들의 저항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권력이 떠나간 후 저항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 자본과 소유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은 거의 생각 못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언론사 간에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언론사 간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언론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언론사 간 분열과 갈등의 역사는 민주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권력과 싸우는 측면에서 다 한 편이었는데 민주화이후에는 언론사간에 대립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헤게모니가 깨지면서 대립되는 두 개의 가치가 대립을 합니다. 언론도 조중동과 한겨레과 경향 이렇게 재편이 된 겁니다.

신문만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후 양 진영으로 갈린 것이 언론구조에도 반영될 결과로 보입니다. 보수언론에 대한 옥석가리기 이야기 하셨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균형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변화를 전면적은 아니라도 일정부분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관과 낙관이 있는데, 낙관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YS시절에 YS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러고 일정한 지분이 있다 이랬는데, YS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혜택도 별로 안 준 것 같고요. 조선일보가 이후에 대통령 만들기를 자제했습니다.

언론들이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전망이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될 수 있는 기미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비관과 낙관이 있는데, 낙관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YS시절에 YS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러고 일정한 지분이 있다 이랬는데, YS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혜택도 별로 안 준 것 같고요. 조선일보가 이후에 대통령 만들기를 자제했습니다. 이후에 중앙일보가 나섰습니다. DJ와 이회창이 대결할 때 중앙일보가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기사, 사설과 칼럼을 총동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무현과 이회창 대결할 때에는 대통령 만들기 하는 언론사가 없었어요. 두 번 대통령만들기에서 별로 이익을 못 봤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신문사 이미지를 깎아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 노골적인 것은 안 하게 되었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비판을 합니다. 가량 대운하 문제에 조중동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면 이명박 정부가 포기를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중동이 10년전처럼 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위상이 추락했겠죠. 시대변화에 부분적으로 적응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관적인 면은 신문이 수입이 독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광고주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독자의 반응보다는 광고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신문은 공짜이고 무엇을 받고 본다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료가 신문사수입의 8% 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처럼 구독료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디어법가지고 한창 대치상황에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의 영향력과 방송의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송에 얼굴 잠깐 나오면 몇 달동안 너 티비나왔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디오와 티비는 아무리 시청률이 낮아도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봅니다. 신문은 아무리 발행부수가 많아도 절대로 수백만 명이 볼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들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언론은 장기적으로 물적기반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독립언론은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인가가 나면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신문은 아무리 발행부수가 많아도 절대로 수백만 명이 볼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들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언론은 장기적으로 물적기반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독립언론은 더 힘들어집니다.

지식인이 정당이나 언론의 영역말고 그 외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대학, 시민사회영역이 있는데 그 외 씽크탱크 특히 진보적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씽크탱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는 지식인들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씽크탱크의 대부분은 정부에 있거나 대기업에 있습니다. 씽크탱크가 정책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면 주문할 수 있는 세력이 있고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열악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보면서 그 원인으로 대안적 정책을 갖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삼성에 의존했지요. 그런 욕구가 있고 현재 십수 개는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민변 3월 월례회가 정관용 선생님이었습니다. 정관용 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당파성의 매몰을 이야기하셨는데 대표적인 분야로 정치와 언론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늘 이대근 에디터님이 오셔서 정치와 언론의 실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강의 끝나고 질문에도 나왔지만 많은 과제와 문제점이 켜켜이 쌓여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이대근 에디터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민변 4월 월례회 마치겠습니다.(박수)

다산 정약용 일일수행

조선 유일의 법률가 다산을 말한다

정리 _**좌세준** 회원

다산은 수사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거나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일시 : 2009. 4. 14.(화) 19:00

참석자 : 강신하, 김선수, 민경한, 이오영, 장주영, 좌세준, 황희석, 김현기(인턴)

좌세준 오늘 공부모임은 최근『다산 정약용의 일일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을 내신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질문과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무 먼저 이렇게 따로 공부모임까지 마련하고 다산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우리 사회 전문가라는 분들을 보면 정작 자격증을 따고 나면 평생 공부하지 않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일수록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실학자요 백과전서적 학자라고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산을 가장 많이 연구한 분은 해방 전에 대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1936년이 다산이 돌아가신 지 100주년 되던 해인데, 당시 정인보 선생이 안재홍 선생 등과 함께 다산의『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편찬하기 위해서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여유당전서』를 76권으로 간행한 분이 정인보 선생입니다.

정인보 선생이야말로 다산의 글들을 완독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인보 선생은“ 다산이야말로 조선 유일의 법률가이자 법률적 논리로 글을 쓴 인물 ’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법조인들이 다산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법률문화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다산은 수사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거나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흠흠신서(欽欽新書)』를 보면 살인사건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의학적 접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산이 강조한 것은 인도주의적 관심입니다. 아무리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다산의 모든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인(囚人)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사람도 다산이었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장으로 사형수라도 본인이 원하면 후손을 남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이야 평생 혼자 살아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만, 조선시대 당시야 여자나 남자나 후손을 갖지 못하면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취급했으니까요. 사형수라도 후손을 남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와 동침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법사학자들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도 다산의 이런 주장은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주장이라 할 만 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범수에 한해서 교도소 내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산의 생각과 뿌리가 같은 게 아닌가 해요.

우스갯소리로 법조에‘ 육조지 ’라는 말이 있지요.‘ 판사는 미뤄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경찰은 때려 조지고, 교도관은 세어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집에서는 팔아 조진다. ’.....(웃음) 다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사와 재판은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지요. 미뤄 조지는 것이 얼마나 큰 폐단인지를 직시하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산의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통치자들 또는 재판관이 밝아지지 못하는 까닭은 백성들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주를 부리고
그 괴로움을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관의 잘못을 항의해야 통치자가 비로소
밝아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저항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본래의 직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다스린 사람이 없다. 청렴할 때만 통치할 수 있다"

백성만 등에 업고 싸우면 어떤 높은 권력이나 독재자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산이 내린 판결 중에 이계심(李啓心) 사건은 가히 솔로몬의 재판이라 할 만 합니다. 황해도 곡산이라는 곳에서 이계심이 백성 천여 명을 이끌고 관청으로 쳐들어가서 고을 원님이 과도한 수탈을 하는 것을 성토하는 시위를 주동하는데 당시 한양에서는 민란이라 보고 다산을 곡산도호부로 보냅니다. 다산이 곡산 도호부사로 부임을 하는 길에 이계심이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산은 이계심을 심문하고 나서 이계심을 무죄석방합니다. 그런데 무죄판결의 이유를 한 번 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합니다.

' 관소이불명자 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 '
(官所以不明者 民工於謨身 不以漠犯官也)

" 통치자들 또는 재판관이 밝아지지 못하는 까닭은 백성들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주를 부리고 그 괴로움을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관의 잘못을 항의해야 통치자가 비로소 밝아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저항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200년 전 전제군주시절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도 인권신장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일 텐데, 나는 3, 40년 전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정말 눈에서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다산의 백성들에 대한 시각은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다음의 글도 되새겨 볼 만합니다.

' 지천무고자 소민야 융중여산자 역소민야 상사수존 대민이쟁 선불굴언 '
(至賤無告者 小民也 隆重如山者 亦小民也 上司雖尊 戴民以爭 鮮不屈焉)

" 지극히 천하고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이 백성들이다. 그런데 역으로 가장 존엄하고 산처럼 무거운 사람 또한 백성이다. 상관이 아무리 높더라도 백성들을 떠받들고 투쟁하면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 "백성만 등에 업고 싸우면 어떤 높은 권력이나 독재자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년 전에 민중의 실체를 인정한 말입니다. 전제군주시절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다산이야말로 역사의 흐름을 내다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엊그제가 다산 173주기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다산이 강조한 이런 통치논리와 사회발전의 논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다

또한 다산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목민심서를 관통하는 핵심은' 청렴 '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인자안인 지자이인 '(仁者安仁 知者利仁)이라고 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인에 편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으로 이롭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인을 통해서 요순시대와 같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산은 공자의 이런 주장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산은 썩어 문드러진 부란(腐爛)의 시대에는 청렴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공자의 위 말을 빗대어' 염자안염 지자이염 '(廉者安廉 知者利廉)이라는 말을 합니다." 청렴한 사람은 청렴에 편안하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으로 이롭게 한다 "는 말입니다. 진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할 때 편안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변호사지만 사실은 변호사 중에도 도둑놈들 많아요. (웃음) 오늘 경향신문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 보세요.

' 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근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야 '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본래의 직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다스린 사람이 없다. 청렴할 때만 통치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이걸 실현한 사람들이 전혀 없잖습니까. 오늘 경향신문에도 나왔다는데 한 번 그 부분 읽어보세요.

황희석 "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임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

권엄은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을 하는데 집을 비우라고 해서 몰아내면 길바닥에서 다 죽을 것이니 내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박석무 그렇습니다. 이 말만 오늘 배워도 여러 분들 다 배운 것입니다.‘ 민변 ’만이라도 이런 모토를 한 번 걸어 놓을 만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만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좌세준 너무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산은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습니다만, 저는 선생님이 쓰신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만약 다산에게 유배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산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산 한 사람을 연구하면 조선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박석무 다산 개인으로 본다면 유배생활은‘ 불행 ’이지요. 일제시대 때 조선에 와서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연구했던 일본인이 자신의 책 서문에“ 정약용의 탄생은 조선왕조의 불행이고, 조선 반도의 행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약용이 조선왕조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는 왕조의 불행이라 할 만하지만, 전체 조선에는 다행이라 할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인보 선생은“ 다산 한 사람을 연구하면 조선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지만 전체 조선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산의 존재는 의미 있는 일이지요.

민경한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글 중에 한성판윤 권엄의 판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권엄은“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을 하는데 집을 비우라고 해서 몰아내면 길바닥에서 다 죽을 것이니 내쫓아서는 안 된다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임금의 지시까지 뿌리치고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권엄의 이야기는 요즘 용산 철거민 문제도 있습니다만, 통치자들이나 판사들도 한 번쯤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석무 예. 당시 권세 있던 자가 자기 부모 묘를 쓰기 위해서 백성들이 사는 집을 비우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권엄이 그런 판결을 한 거지요.

“높은 지위는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산도 목민심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공양이나 생계를 유지한다는 구실로 고위직 벼슬이나
목민관이 될 생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주영 저도 예전에 선생님이 쓰신 글에 나와 있는‘ 사존거비 (辭尊居卑)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이번에 내신 책에도‘ 벼슬살이의 원칙 ’이라는 글에 다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박석무 예.“ 높은 지위는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는 말이지요. 다산도 목민심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공양이나 생계를 유지한다는 구실로 고위직 벼슬이나 목민관이 될 생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산의 ‘전론’(田論)에 감탄한 김남주 시인

장주영 다산은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했는데, 공동소유제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할만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석무 다산의 여전제 주장은‘ 전론 ’(田論)이라는 짧은 논문에 나옵니다. 여(閭)는 25호에서 30호되는 마을 단위를 말합니다. 여(閭)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여전(閭田)이라고 합니다. 마을 단위로 그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공동경작,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다산이 구상했던 독특한 토지제도인데 병농합일도 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착취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토지제도 구상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한다거나 다른 생산분야 일을 하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김남주 시인하고 광주에서 같이 감옥을 살았는데 김남주 시인이 다산의 전론을 읽어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제가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서문에도 썼습니다만, 김남주 시인이‘ 전론을 읽으며 ’라는 시를 썼어요. 김남주가 다산의 전론을 하도 좋아해서 전론을 다 외워요. 내가 다산 책을 많이 빌려주기도 했는데,

'고적'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직자들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적제는 주례(周禮)에 나오는 것인데 다산은 고적제를 높이 평가합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형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도 고적제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산은 사실상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산은 가는 곳마다 시를 지었는데, 다산이 쓴 시만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 쓴 시라는
기록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다산의 일대기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남주가 다산을 많이 읽었어요. 당시 종이가 없으니까 우유곽 안에 있는 은박지를 벗겨서 못으로 시를 썼어요. 다 쓴 다음에는" 형님 이 시 제대로 됐나 한 번 보시요 "라고 하면서 보여줘요. 처음에는 제목이' 다산이여 다산이여 였는데 후에 시집을 내면서' 전론을 읽으며 '로 바뀌었어요. 바로 이 전론에 나와 있는 것이 여전제입니다.

김선수 다산은 고적(考績)제도도 상당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고위 공무원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구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박석무 그렇습니다.' 고적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직자들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적제는 주례(周禮)에 나오는 것인데 다산은 고적제를 높이 평가합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형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도 고적제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신하 다산은 천주교 신자였다는 이유로 사실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데요. 다산과 천주교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습니까.

박석무 다산은 한 때 천주교를 믿었어요. 다산의 자형이 이승훈이잖습니까. 당시 개혁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천주교에는 상놈과 양반의 신분차별이 없는 것을 보고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산 스스로도 천주교에 대해서는" 한 때 열모했으나 부모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보고 멀리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금(國禁)하므로 마침내 뜻을 꺾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도 정치인이 한 번 좌익으로 몰리면 계속해서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듯이 다산도 천주교를 배교했지만 나중에 천주교를 믿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조가 죽고 나서는 반대파들에게 천주교 신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좌세준 사실 다산의' 변방사동부승지소 라는 글을 보면 천주교에 대한 다산의 전향서를 읽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 결국 장기간의 유배를 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천주교 가 되는 것을 보면,' 좌익 이니' 색깔론 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현대정치사가 떠오릅니다. 오히려 저는 다산이 한 때 천주교 신자였고, 유배 기간 중에는 초의 같은 불교 승려하고도 교류하면서 전체적인 사상이 아주 다양하고 깊어지게 되는 면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다산이 형 정약전과 주고받은 편지가 나오는데, 혜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약전은" 지구가 움직이는 확실한 증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약용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런 점을 보면 정약전은 오히려 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요,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쓰기도 했잖습니까.

박석무 실제로 다산은 형인 정약전을 엄청나게 존경하는 모습이 여러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혜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변이 발생할 징조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약전의 생각은 상당히 실증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수 다산은 기록하는 습관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박석무 다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만, 다산은 사실상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산은 가는 곳마다 시를 지었는데, 다산이 쓴 시만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 쓴 시라는 기록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다산의 일대기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학문하는 기본자세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좌세준 예. 오늘 공부모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석무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회원동정

어느 로스쿨 교수의 사생활

글 _**전형배** 회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진 변호사의 전화 한 통

하루에 한두 번 울리는 휴대전화. 그 전화를 서울에 있는 김진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청명함과 당돌함이 현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목소리, 언제 들어도 반갑다. 게다가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나에게 김진 변호사의 연락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스타카토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포르테다. 그가 하는 말이면 거의 다 신뢰하며 그가 요청하는 일이면 대부분 기꺼이 응하고 싶다. (이 정도면 됐지? 김변.) 그런 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에 원고를 기고하란다. 망설일 것 없다. 누가 청하는 것인데 거절하랴. 오히려 영광스럽게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정체불명의 잡지와는 격을 달리하는, 한승헌 변호사님이 표지의 제자를 쓰시고 김현경 선생님이 삽화를 그리신 그 잡지에 글을 쓴다는 것이 좀처럼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이런 내심의 의사를 극도로 억압한 채 어렵게 틈을 내어 글 쓰는 듯 외양을 만들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로스쿨 교수의 사생활을 공개하게 되었다.

로스쿨 교수가 되기까지

변호사 생활을 접은 게 엊새에 바람이 일던 2007년 9월이니 오는 9월이면 교수생활을 한지 벌써 2년이 된다. 참 빠르다. 가끔 나의 근황을 모르는 예전 의뢰인이 또 분쟁이 생겼다며 전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전화로 법률상담을 하는 예는 이제 거의 없다. 이럴 때면 내 생업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든다. 최초 교수생활은 대전에서 시작했다.

대전에는 1년이 조금 못되게 있었는데 E대학교에 있는 민변 회원인 모 선배의 추천으로 지금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형, 고마워요. 그런데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 !) 춘천에 있는 강원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도 춘천으로 이사했다. 춘천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역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여름에 수도꼭지를 열면 "앗, 차가워!"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원한 물이 콸콸 터진다.

서울시청도 같은 말을 하기는 하지만 춘천 수돗물은 그대로 마셔도 된단다. 그래서 가끔 급하거나 정수기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귀찮을 때는 연구실 안에 설치된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공기의 깨끗함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법과대 건물 복도에서 바라보는 맑은 춘천 하늘은 언제 봐도 시원하다. 비록 무수한 아파트 건립으로 예전의 구수한 풍경이 사라졌다고 타박하는 분도 있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탁 트인 하늘이다. 게다가 차를 타고 20분만 나가면 야생의 자연이 있다.

로스쿨 교수로서의 생활

사실 교수를 하면 좀 놀 수 있는 시간이 변호사를 할 때보다는 많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교수 초짜이다 보니, 중견 교수면 다 갖고 있는 자신만의 강의노트나 교과서가 없다. 수업을 알차게 진행하려면 매 강의 전, 강의안을 짜고 강의 후에도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는데 주 5일 근무 중 강의시간을 포함해 이틀이 걸린다. 그럼, 남는 시간은 나머지 사흘이다. 이 사흘은 그냥 날로 먹느냐? 그게 아니다. 로스쿨 시행 초기이다 보니 학교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다. 아마 다른 로스쿨도 비슷한 사정일 게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내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회의시간이 만만치 않다.

회의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젊은 교수들이 안을 만들어 간다. (이 사회도 '짬밥' 순이다.) 젊은 교수들이 위원회의 간사쯤 되는 역할을 하는데 나도 그 중 한자리를 차지한다.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중 반나절은 회의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다행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도가 하나씩 정착되고 회의 횟수와 회의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자, 이제 남은 이틀 반은 무엇을 하느냐? 노느냐? 아니다. (여기서 내가 논다고 생각하는 회원 분이 계신다면 날 잘못 본거다!) 교수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 한다. 논문 쓰는 것을 이 동네에선 연구업적을 쌓는다고 부르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연구업적을 쌓아놔야 재임용과 승진에 큰 무리가 없다. 물론, 공부하고 논문 발표하는 것이 단순히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운 민변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2006년인가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변에서 '모범회원상'을 받았다.) 교수를 하고 있는데 논문 한 편 제대로 안 쓰고 노는 교수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는가? 그런데 논문이라는 것이 에세이와 달라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논문 한 편 발표해 놓으면 당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인터넷을 정신없이 떠돌게 되는데 어줍게 쓰면 길이길이 망신이다. 그래서 한 참을 쓰다가도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방향을 선회하기도 하고 아예 쓰던 논문을 중단하기도 하니 평일 이틀 반의 시간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5일이 간다. 그럼, 주말은 쉬느냐? 아, 나만의 특수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주말엔 서울에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그나마 나를 비롯한 과정생의 많은 숫자가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지도 교수님이 주말 수업을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막 빠지면 안 된다.

장한 아버지로서의 하루

그렇게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뛰고 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5월 초순, 체력이 점차 소진되면서 만성피로가 느껴진다. 오른쪽 입술언저리가 갈라졌다. 피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강하다, 장하다! 올 10월이면 첫 돌을 맞는 막내딸과 여섯 살인 첫째 딸의 아버지로서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두 눈 부릅뜨고 전진 또 전진이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오늘도 시계바늘이 오후 6시를 알리면 무엇을 하고 있던지 그 작업을 멈추고 퇴근준비를 한다. 집에 가서 아이들과 최대한 즐겁게 놀아야 한다. 미용실 놀이하면서 손님이 된다. 마흔 살을 앞두고 한참 빠져가는 내 머리카락을 큰 딸의 손아귀에 쥐어 주어야 하며, 엄격한 선생님 놀이에서 말 잘 듣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6살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다! 밤 10시다. 슬슬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그러나 그냥 자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말썽꾸러기 '신짱구'와 '아따맘마'가 등장하는 창작동화를 큰 딸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큰 딸은 아빠가 만든 모순투성이의 창작동화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든다. 그럼, 사랑스런 나의 아내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노느냐? 천만의 말씀. 그녀는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을 하면서 둘째를 돌보고 있다. 나보다 더 피곤해 보인다.

지면으로 최초 공개되는 38살, 어느 로스쿨 조교수의 삶이다. 방학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는가? 학기 중엔 논문쓰기 어렵다고. 방학엔 반드시 논문을 써야 한다. 이 때 못쓰면 정말 쓸 시간이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지난 3회에 걸친 방학을 모두 논문 쓰는데 보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걷고 있다.

로스쿨의 현황과 미래

여기서 원고를 끝내면, 로스쿨 교수의 공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애초의 취지가 몰각된 현행 로스쿨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제도의 목적을 거칠게 표현하자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문턱도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로스쿨제도는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법시험제도의 재탕이 되어버렸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사법시험제도의 재탕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쉽게 로스쿨에 진학해서 교육과정을 온전히 이수하면 어렵지 않게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판사, 검사의 상당한 수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충원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틀이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많이 깨져버렸다. 로스쿨로 인가받은 학교의 수가 제한되다보니 입학경쟁이 치열해졌다. 로스쿨 인가조건에 물적 투자를 지나치게 요구하다보니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합격자 수를 상당히 제한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변호사시험과목을 중심으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은 개설조차 어려운 형편인데 2009년 1학기 모 로스쿨에선 노동법마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었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해도 곧바로 변호사 단독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말이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추가연수제도를 만들겠다는 말도 있고, 법원과 검찰이 별도의 시험을 치른 후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말도 있다. 이쯤 되면 로스쿨은 시간과 돈만 많이 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로스쿨 교수해서 먹고사는 너의 해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로스쿨 숫자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각 로스쿨의 학생 정원도 늘려주세요. 로스쿨 인가요건도 완화해 주세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지금보다 더 저리로 학자금 융자를 해주세요.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이율이 7%가 조금 넘는데 이것은 돈을 버는 변호사들의 신용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요.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높여주세요. 시험합격 후 별도의 연수제도를 개설하면 안 돼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별도의 판검사 임용시험을 두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무 과격한 제안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으면 로스쿨은 어떤 주간잡지가 소리 높여 외친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법조인력양성제도로 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그들만의 리그도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로스쿨제도 만들자고 할 때 어느 누가 지금의 로스쿨제도를 지향했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다. 그렇다면 큰 시각에서 우리 모두가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 바라건대, 민변에서도 로스쿨제도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대안을 계속 제기해 주었으면 한다.

로스쿨은 사법개혁프로젝트의 중요한 한 축이지 않았는가? 나는 이대로 가면 모두가 추구했던 정의롭고 아름다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창밖으로 별이 바람에 스치고 있다. 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회원동정

어느 늦깎이 민변 회원의 소회

글 _**이영진** 회원

가입하기까지

개업한지 햇수로 8년차에 접어든 내가 왜 새삼스레 이제 와서야 민변에 가입했을까. 가장 짧게 대답하면 '회비를 내고 싶어서'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민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내지 해야 한다는 생각만 품고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가 '회원 가입하여 회비만 내어도 민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얼마 전 사무실 개업을 함께 한 옆방의 김영희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바로 가입하여 회비라도 보태자 하여 가입을 하게 된 것이다.

민변 가입은 이렇듯 나에게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해야 할 일 목록 맨 상단에 항상 올라가 있었던,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와도 같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일을 좀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것은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여 출산과 육아의 늪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나의 일에 대한 결벽증적인 성벽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면 그나마 가장 그럴 듯한 변명이 될 것 같다. 나에겐 아마도 중학생 무렵부터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일이든 정말 잘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는 못된 성벽이 있다. 모범생 여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졌을 법한 이 놈의 성벽은 항상 완벽주의를 추구하도록 하여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기여도 하였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 순간마다 '제대로 못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마라 그건 민폐다' 하고 끊임없이 속삭여 나를 주저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나의 활동 폭을 매우 좁힌 주범이기도 하다.

이 바닥 여성변호사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벽의 소유자 가운데 하나이었던 나는 사법연수원 2년차에 결혼하여 로펌에 입사할 때에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한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 별 문제의식 없이 그저 2년 정도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출산계획을 밝히고 입사하였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가 어디 인간이 계획한 대로만 되던가! 로펌에서 자문파트 변호사로 살면서 내가 짜는 스케줄은 없으며 오로지 나에게 배당되는,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일이 나의 스케줄을 짜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출산을 하고 돌봐야 할 아이가 생기고부터는 회사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었음에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회사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나약한 자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생기면서 처음 알았다.

중견로펌에서 신생 소형로펌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다시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기까지 여성변호사의 홀로서기의 과정은 나름 파란만장했다. 그간 내가 로펌에

서 여성변호사로서 겪은 고민이나 문제의식, 애환들은 민변 회원이신 이유정 교수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로스쿨시대의 법률시장과 여성변호사"라는 글에 담긴 로펌에 근무하는 여성변호사의 일반적인 상황에 너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여성변호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좋은 문제제기를 해 주신 논문이라 여겨진다.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는 제대로 활동할 자신이 없어서 민변가입을 미루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비 내는 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서, 회비 내는 회원이 되고자 민변에 가입한 것이다.

입회 후 찾은 마음의 평화

그러나 막상 입회를 하여 회원이 되고나니 회비만 내고 있기는 어려운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일단 회원들에게 보내는 각종 소식메일들이 나의 이메일함에 오기 시작했다. 긴급 현안에 대한 변호인단 모집공지부터 월례회, 공부모임, 회원 동정까지 하루에도 많은 수의 이메일들이 날아왔다.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 그냥 스크린만 하면서 지냈는데, 회원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무렵 민변 경제강좌 안내메일을 보고는 짧지 않은 시간 갈등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 강좌를 듣게 되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이나 기타 흔히 시중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경제서적들을 몇 권 읽어 보아도 경제를 보고 해석하는 눈은 전혀 없어 답답하던 차에 잘 되었다 싶었다. 민변에서 흔히 하는 강좌 중 하나로 생각했는데, 막상 듣고 보니 민변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야심한 강좌이었다.

나 같은 경제 문외한에게는 매우 유익한 강좌였고, 어느 회원의 말처럼 여러 경제이론에 휘둘리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의미있는 강좌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 강좌를 듣고 뒤풀이에 가끔 참가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민변과 민변의 선배 회원들과 친숙해진 것 같다.

그러던 중에 촛불변호인단 긴급공지 이메일을 받고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같이 하는 일이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 한 번 해 보라는 김영희 변호사님의 권유와 당시 시급하다는 공지메일에 빨리 일손이라도 하나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촛불변호인단 활동을 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촛불시위가 있던 날 가까운 호프에서 술을 마시다 늦은 밤 귀가 도중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경찰들에 포위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을 목도하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경찰들에게 아이들을 귀가시키라고 호소하면서 함께 있던 중 아이들과 같이 포위되어 연행되었다가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회사원이나 대구에서 올라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후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던 중 기차가 끊어져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계속 촛불문화제 현장에 있다가 교통이 너무 혼잡하여 사고가 날까 시위대 교통정리를 자처하던 중 다음날 첫 전철이 오기 30분 전 일제히 연행되어 비슷한 액수의 벌금형을 받고 약식기소된 대학생 등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더 정확하게는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되게 되면 얼마나 사악하고 야만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변론에 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변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용산참사사건 등 많은 사건들을 대하면서, 내가 입회하기 전부터 다른 많은 민변의 기존 선후배회원들이 해왔을 힘들고 외로웠을 활동들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이 분들에게 빚을 지면서 내 앞가림하기에 바빴던 것이었구나 하는 심한 부채감이 밀려왔다.

회비만 내는 회원이 되겠다더니 어느새 촛불변호인단이 되어 있는 나를 보고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벌써 열성회원이 되었냐고 놀리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나 스스로에게 회비만 내는 회원이 되어서는 지난 8년간 내 게으름으로 인한 부채감을 씻기 바쁘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밀려들고 있고, 내가 가진 미약한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서 해야겠다는 기특한 마음을 먹어가고 있는 중이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소박한 바람

내가 이런 기특한 마음을 먹게 된 데에는 우리 아이들도 일조를 하였다. 나는 일곱 살배기 딸과 네 살배기 아들의 엄마다. 아직 아이들은 엄마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딸아이는 그나마 엄마는 일하는 엄마이고 컴퓨터를 치는 일을 한다는 정도로 안다.

얼마 전 그 딸이 진지한 눈망울로 내게 '엄마, 나는 일 안하고 집에 있는 엄마가 될 거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겠기에 더 묻지 않았고, 가슴 한 구석이 녀석에 대한 미안함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이 녀석들이 더 커서 머리가 굵어졌을 때, 내게 엄마는 왜 집에서 우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챙겨주지 않고 일을 했냐고 물어볼 때 나는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까? '너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녀석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가난하더라도 집에서 엄마가 챙겨주는 편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라고 반격해 올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숨쉬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야만과 몰상식과 부당함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마는 변호사로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고, 너희들을 떠나 집을 떠나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건 다 그 때문이란다' 하고 다소 허황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럴 듯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두어야겠다.

그런 변명거리에 이용해 먹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라도 민변을 통한 공익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자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점이 나를 민변에 입회시킨 우리 아이들의 기여분이다. 영문학을 공부하던 문학소녀 시절의 내가 수업시간 중에 커리큘럼으로 읽다가 가장 감동받았던 문구는 미국소설 시간에 읽었던 위대한 개츠비 맨 앞에 나오는 주인공 개츠비의 독백 부분이다.

지금 원문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는 항상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른 사람이 너와 다른 불합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분노하지 말고 그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네가 가진 능력이나 양식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의역하여 옮겨놓으니 전혀 감동적이지 않아졌는데, 이 문구는 그 소설을 읽을 당시 어린 대학생으로 여러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고 독선과 위선을 목격할 때마다 분노하고 힘들어하던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마음의 여유를 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분노하지 않기란 도의 경지가 비범하지 않고는 매우 힘들어졌으며, 분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뒤늦게 입회한 민변이 나의 이러한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좋은 그릇이 되어 줄 것이라 믿으며, 뒤늦게라도 가입하여 변호사로서 오래 묵힌 숙제를 하나 함과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직 소속위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일손이 가장 부족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일하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나마 로펌에서 해본 기업자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면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저 생각만 많다.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변에서 할 일은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새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편하게 생각하기로 한다.

민변 노동위원회 – 일본 노동조합법(번역서)

니시타니 사토시 지음, 김진국 외 옮김
박영사 2009. 4. 15. 발간
586쪽 / B5 / 값 40,000원

김진국 회원을 비롯한 민변 노동위원회 선후배 9명이 번역한 니시타니 사토시 교수의 〈노동조합법〉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2007년 가을 한양대학교에서 가진 민변 노동위원회와 일본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10번째 교류회에서 저자의 강연을 듣고 감동한 몇몇 변호사가 시작한 '강독팀'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강독팀 변호사들도 이것을 번역하여 출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강독 모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들을 꿰뚫고 있는 힘에 있다. 그것은 단결권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되, 그것이 또 다른 억압이 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이다. 언뜻 보기에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은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곳곳에 어우러져 있다. 이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 노동자의 인권,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한 애정 때문일 것이다.

이미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음에도 외국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 것에는, 비록 사정과 법 조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와 그 바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이 동일한 것임을 되새겨 보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강독팀 회원들은 스스로 세미나를 통해 다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법 관련 논의들과 판례를 읽어 가면서 거기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노조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듯이,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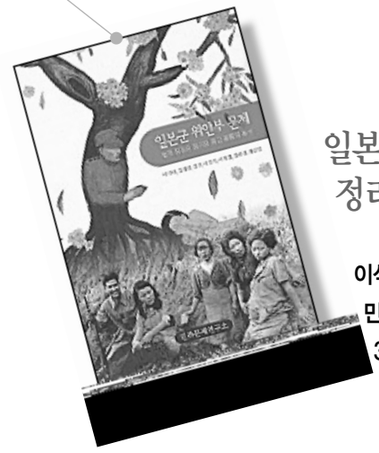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이석태 외 지음
민족문제연구소 2009. 3. 15. 발간
326쪽 / B6 / 값 15,000원

이석태, 김재영, 이상희, 김진, 이재정, 최중영, 정혜선 등 민변 회원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지난 해 1년 가까이 계속된 이들의 세미나 결과를 담고 있는데, 총론에 해당하는 1장 일본국 위안부 문제의 선결 쟁점들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2장), 일본군 위한부 문제와 유엔 인권기구–국제 NGO 활동을 포함하여(3장), ILO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4장),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5장),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6장),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7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각국 결의를 비롯한 최근의 동향(8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이나 연구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률가들이 최근까지의 법적 쟁점을 모아서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필자들은 분석의 심화 이전에, 2007년 7월 미국 연방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와 같은 새로운 국제 사회의 동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다양한 부문별 법적 쟁점을 한 권의 책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2009년 4월 9일 헌법재판소가 한일협정에 기한 분쟁해결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부작위인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진행된 위안부 관련 법적 절차 진행 경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다.

아는 이제 더 이상 '외신'이 아니라 참혹함이 함께 느껴지는 곳이 되었다.

토요일은 홍콩의 유명한 관광 명소라는 '빅토리아 피크'에 시가 전차(tram)를 타고 올라갔다. 홍콩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한다. 하지만 내가 올라간 날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세상은 뿌옇게 보였고, 구름만이 사방에 가득할 뿐이었다. 구름이 걷히고 보이는 야경도 결국은 높이 솟은 건물들을 조명으로 뒤덮은 허상이리라 생각하니 오히려 구름의 실체가 느껴지는 색다른 체험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확하게 답이 보이지 않는 의문들이 뿌연 구름만큼 계속 떠올랐다. 한국의 사법부는 그 책임성을 다하고 있는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법부는 '책임성'을 벗어버린 홀가분한 독립성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아시아 인권연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한 채 요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또 조금씩 회의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슬픔, 충격, 다짐들을 잊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 회의에 참석했던 친구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았다. 전자우편의 내용처럼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을 넘어 한걸음씩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Dear Seon-Young,

I think memories of our meeting at the AHRC in Hong Kong last month must have began to fade. Hence I thought of reviving the memories by writing to you now. It was nice meeting you there and listening to you about the situation in the your country. I hope we will be able to cultivate our relationship by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ctivities in our respective lands. A lot has happened in our lands since we met last and the picture is not very rosy for people like you and me.

Let us hope for better days in the future. With my kind regards and wishing you all the best.

친애하는 선영씨께,

지난 달 홍콩 AHRC에서의 우리 만남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흐려지는 기억들을 되살리고자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만나고 또 당신의 나라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우리 각각의 나라에서의 인권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후 우리들의 땅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는 미래가 그다지 장밋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더 나을 날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이 있길 기원합시다. 진심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시보이야기

열정의 3~4월,

민변 시보생활과 용산참사 공판

글 _윤혜령 사법연수생

필자 윤혜령 씨는 사법연수원 39기로, 2009년 3~4월에 민변에서 변호사 시보를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체 실무수습을 하면서 용산참사 변호인단에 참여할 계기가 생겼다. 법원시보를 하면서 접했던 용산참사를 보며 적지 않은 분노를 느꼈더랬다. 분노를 넘어서 사건의 중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은 법원시보를 하며 두 건의 국선사건을 맡아본 것이 전부인 연수생에겐 큰 행운이다.

치열했던 변호인단 회의와 공판준비기일

1, 2월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기소가 된 상황이라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판 준비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각자 맡은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상황보고 및 국민 참여재판 대비 쟁점 준비, 기록정리 및 파악, 공소사실 인부, 증거인부, 사실상 및 법률상 주장 입증계획 준비 등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9명이고 증거로 제출된 증거기록만도 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방대한 사건의 공판준비를 하는 일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형사 변호사 실무라는 것이 기록을 보고 서면만 잘 쓰면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나로서는 피의자접견, 피의자 신문시의 참여 등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의 공소사실의 인부 및 증거 인부 등의 과정이 실제 공판의 결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 3회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제1회 준비 기일에선 피고인들이 신청한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각각 밝히고 변호인 측의 쟁점정리가 행해졌다. 제2차 준비 기일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낸 입증계획을 재판부가 검토한 후 국민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의 수만도 60명을 넘는 관계로 생업이 있는 배심원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지만 변호인단은 그동안 참여재판을 염두하고 공판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공판준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실무의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안타까웠다. 제3회 준비 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인부 및 미리 제출한 증거인부에 대한 증거결정이 이루어졌다. 연수원에서 행해지는 법정방청에서는 공판기일만을 보아왔는데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준비하면서 검찰 측과 재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재판부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준비기일의 활동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참관하게 되어 연수생인 나로서는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공정한 재판의 전제, 열람등사권의 보장

변호인단은 변호준비를 하며 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틈틈이, 또는 회의 때마다 꼼꼼히 살펴본다. 변호인이 맡은 사건의 사건기록을 등사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 준비를 하는 것은 연수생인 나도 해본 일

이다.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미리 파악하여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입증계획을 세워 변론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공판준비를 하였는데, 등사가 허용된 수사기록에는 일부의 수사기록이 빠져 있었고 이러한 수사기록은 피고인들의 사실상 법률상 주장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변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변호인단에서는 다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등사 허용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허용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재차 거부의 뜻을 밝혀왔다.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빠진 수사기록의 중요성과 검찰의 객관의무를 강력히 피력하며 검찰의 등사거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육지책으로 재판부에 압수수색 신청서까지 제출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검찰에 대하여 거부된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제재 이외에 압수수색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법을 공부하며 배워왔던 열람 등사권의 보장이 실무에서는 꼭 교과서에서 배운 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다양한 방면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수사기록의 파악은 재판준비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전제이며 결국은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재량이나 열람 등사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인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곤란으로 인하여 변호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원의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불복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의 미비 때문이기도 한만큼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공판기일

공판기일이 다가오면서 변호인단은 모두진술 준비와 서증조사에 대비한 의견준비, 증인신문준비로 더욱 바빠졌다. 제1회 공판기일 오전에는 모두진술이 오후에는 서증조사가 이루어졌다. 통상 모두진술은 간단히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변호인단의 모두진술은 사건의 배경인 재개발과정의 문제점 및 용역폭력 문제와 사건 당시의 경찰의 공무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을 통해 앞으로 다투고 변호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모두진술 중간에 이번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의 편지를 낭독하여 방청인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기도 하였다.

오후의 서증조사는 검찰 측이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서증조사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고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출된 증거서류에 대해서 차근차근 요지의 고지가 이루어졌다. 제2회 공판기일에는 재개발과정 및 용역 폭력에 대한 입증을 위한 재개발조합의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했다.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준비된 신문사항뿐이 아니라 증인 답변의 모순 및 불합리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추가 질문이 행해지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다.

안타깝게도 2달의 짧은 수습기간이 끝남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까지밖에 참관하지 못하였지만,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모두 지켜본 나는 앞으로의 재판준비 및 진행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들이 필요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변호인단이 정말로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도 예상할 수 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이덕우 변호사님이 하신 모두진술을 아래에 적어보고자 하는데, 변호인단이 재판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또한 이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진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모든 죽음 앞에 숙연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5명의 철거민들의 죽음과 1명의 경찰의 죽음,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시공사인 삼성이 용산 재개발로 얻게 되는 수익은 1조 4천 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1조라는 돈에 대한 관념도 없고, 그렇게 큰돈을 만져본 적도 없어서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지인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감이 왔습니다. 잠실 운동장 같은 곳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1만을 모여 놓고 한명 당 1억의 돈을 주면 1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 잔치에 세입자들은 쫓겨나듯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능력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꽃 남이 아닌 사람, 부자 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쫓아내고 능력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현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은 6명의 죽음 앞에 경찰 특공대 1명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기소가 되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기 이루어져서 앞으로 재개발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이후에 건설사의 비리와 부패가 많이 근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쟁점 외에도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허나 수사기록 열람 등사도 거부당하고 결국에는 압수수색 신청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죽음에 그 원인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특공대 1명과 우리 이웃 아저씨 5명의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경찰특공대 1명의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처벌은 이루어지고 철거민5인에 대한 법적 평가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재판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참사

용산참사가 단순히 세입자와 공권력의 다툼으로만 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사건의 본질은 거대자본에 의해서 속도전으로 휘몰아치는 재개발 제도 자체에 있다. 재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생활자의 주거권 개선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재개발제도는 도시의 잠재적인 중산층 계층을 도시 빈민으로 양산해내는, 즉 주거권의 개선이 아닌 주거권의 박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세희씨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집필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폭력이 난무하는 재개발 관행도 세입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철거민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번 용산참사가 마무리 된다면 이는 곧 제2의, 혹은 제3의 참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의 지대가 좀 높아서 시야에 저지대의 집들이 보이는데, 간발의 차로 재개발 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여 모여든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성냥갑처럼 내려다보인다. 이덕우 변호사님의 모두진술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을 내몰고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인지 생각해본다. 거듭 생각해봐도 여전히 나는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구태여 정치적인 이념을 논하지 않더라도 나로서는 당연한 대답이다.

용산 참사 후 100일이 지났다. 세상은 이미 용산을 잊은 것 같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 느낀 분노가 잠시의 분노로만 끝날 수는 없다. 법은 혼자서는 서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용산 변호인단은 당시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 시작된 용산 재판에 냉철한 법률가로서 임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재판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이번 재판을 계기로 참사의 근본적 문제였던 재개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나 역시도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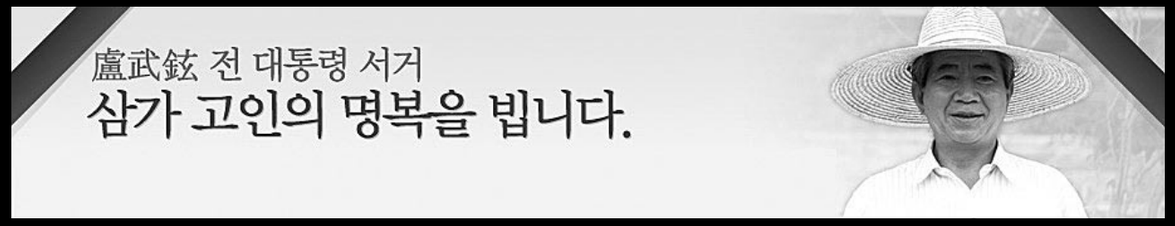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부쳐

글 _**류제성** 상근 변호사

바보 노무현에 대해 감동을 느낀 이유는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이자 눈앞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이 소신과 신념을 실천하는 행동주의자이면서, 권위와 위선을 모르는 소탈하고 정직한, 정치인 같지 않은 노무현에 감동했던 것이다. 그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이 어우러져 대통령 노무현을 낳았다. 바보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나는 감격했고, 그의 당선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역사는 또 한 걸음 진보를 이루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대통령 노무현은 더 이상 나를 감격시키지 못했다. 미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듯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미움으로, 미움은 다시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졌다. 조 · 중 · 동과 수구세력은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대통령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다지 좌파적이지도 참여적이지도 않은 참여정부가 싫었고 대통령 노무현을 변호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아마도 스스로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대개가 그랬을 것이다.

이런 무관심은 그의 퇴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가 고향마을에서 만들려고 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 서거 이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검찰이 유죄입증이 곤란해 보이는 혐의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의 먼지 한줌까지 털어내려는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매장할 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도덕성에 있어서 만큼은 강한 자부심을 지녔던 그마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구나 하는 또 하나의 실망이 더해졌을 뿐이다. 그분이 세상을 향해 소통했던 도구인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버리라고 했을 때도, 최소한의 사생활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을 때도 자업자득 아닌가 하고 냉소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하지 말라 하셨지만 너무나 죄송하다. 모두가 그분을 조롱할 때 그 부당함을 비판하지 않고, 그분을 변호하지 않은 자가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명박 정권의 잔학함과 위선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으로서의 노무현이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그 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분을 내쳐버렸던 것은 아닌가. 그분의 치열했던 삶과 진정성, 그리고 그분이 추구했던, 당연히 누리는 것인 줄 알았지만 투쟁과 희생 없이는 지켜낼 수 없는 그 가치, 이런 것들마저 무시해버린 것은 아닌가. 대통령 노무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너무 쉽게 보았던 것은 아닌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역시 진보를 자처했던 개혁가 노무현과도 손잡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상생과 소통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그러나 이명박 시대가 과거로 역주행 한다고 해서, 다시 노무현을 불러낼 수는 없지 않은가? 노무현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통령 노무현은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현실은 알았으나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부족했다. 그것이 대통령 노무현의 가장 큰 한계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노무현만의 한계였을까. 우리 시대의 한계는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렇게 내게 후회와 자책과 미안함을, 그리고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새 시대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가라는 고민을. 물론 지금은 충분히 애도하고 분노할 때이다. 애도와 분노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열고자 갈망했던 새 시대를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래 내용 전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minbyu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 평 PSI 전면 참여조치 철회를 촉구한다 2009-05-26

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다국적 국제 군사훈련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불러옴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높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교류는 급격히 후퇴, 중단됨으로써 남북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불안한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사회적 불안의 증폭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렇듯 남북관계의 파국적인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해 놓고서도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며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무마하는 듯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매우 동떨어진 현실 인식으로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은 분명하나 이것이 PSI참여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북 강경정책 이외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책기조를 바꾸어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화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남북사이의 신뢰 재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과 정부 모두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시기이다. PSI전면 참여조치는 긴장의 격화 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철회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2009월 5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시민단체 공동성명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과 요구 2009-04-08

북한이 4월 5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갈등을 유발하는 PSI 참여가 아니라 대북특사 파견 등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한다. 강경한 정부 대응이 일본의 군비증강과 해외 군사활동을 확대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한반도 비핵평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의 갈등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의 자제와 외교적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연합

논 평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2009-04-16

"신대법관 재판기피신청에 부쳐"

신대법관의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헌재에서 위헌심리중인 집시법을 무시하고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한 것, 수차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일선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신대법관은 촛불사건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요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신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권 침해' 사건을 두고 계속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사법질서 전반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신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논 평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09-04-20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의 인식은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촛불재판 관여 등 근래 법원 흐름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이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의견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05-08

이번 개정안이 전체 근로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노동계를 배제하고 학계 등 관련 단체로부터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으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기간제근로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사실관계를 전도하여 현실과 정반대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여 잘못된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논 평 법원과 신대법관은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라 2009-05-08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직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징계

권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형식논리이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윤리위 결정에 따르더라도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실은 다시 확인되었다.

재판 관여는 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가 인정된 이상 신대법관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지위를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재배당까지 된 마당에 신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성 명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2009-05-13

대법원장은 사건 초기 신대법관의 행동이 재판에 대한 압력이 아니며 자신도 신대법관과 같은 생각이라며 신대법관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또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하였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윤리위가 애초 징계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처럼 권한도 의지도 없는 윤리위에 사건을 부의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단독 판사 대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서는 상황 속에서도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끝내 법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기회를 박차버렸다.

또한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하게 분출되는 문제제기를 외면함으로써 법원 조직 전체를 위기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하고 있다. 국민과 시민사회는 법원의 무책임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 역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대법관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성 명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마저 연행하는 불법체포를 규탄한다! 2009-05-14

5월14일 12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용산참사의 유족들과 함께 수사기록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검찰의 진실은폐와 편파 · 왜곡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철거민들의 변호인인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 7명이 체포 ·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시위가 우려된다는 상투적인 이유로 당초 예정이었던 규탄대회 집회신고가 반려돼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기자회견 종료를 선언하고 해산하던 중 경찰은 참가자들을 둘러싸 연행하고 이에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시민들을 줄줄이 체포 · 연행했다.

우리는 오늘의 체포연행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관련 수사기록 전부를 제공해 달라는 용산사건 피고인들과 유가족들의 요구를 폭압적으로 묵살하고 그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한 사건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사기록 일체를 교부하여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협력하라. 나아가,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체포 · 감금한 행위를 사과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정기구독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시사쟁점에 대한 민변의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
민변의 활동,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ttp://www.minbyun.org 에서
구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 : 1년 6회 발행 30,000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화 문의 : 02-522-7284
메일 문의 : info@minbyun.org